

현안분석 2009-14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강화를 위한 법제연구

- 일본의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강화를 중심으로 -

정 명 운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강화를 위한 법제연구

- 일본의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강화를 중심으로 -
- Legislation to Strengthen Research Collaboration with
Agriculture-Fishery and Small & Midium Enterprise
- Mainly on Japanese Agriculture-Fishery and the Cooperation
of the Small and Midium Enterprise -

연구자 : 정명운(부연구위원)
Jung, Myeong-Un

2009. 12. 18.

국문 요약

경제가 복잡 다기능 적으로 형성되고 또한 국경 없는 무역이 오늘날 자유롭게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산업체계에도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요구는 대외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더욱더 활발해 지고 있으며, 산업 간의 장벽을 넘어 상호 연계하여 경제발전의 향상과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모색 중 하나가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와 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협정이라 할 수 있다. 이 업무협정은 기존의 산업체계의 범주를 벗어나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이루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는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산업 간의 연계, 그것도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아직 넘어야 하고 구축하여야 할 시스템이 산재해 있다. 즉 보다 나은 산업 간의 연계와 이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설계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것도 거버넌스를 통한 산업 간 연계·촉진이라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법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제도의 구축과 운용에 있어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자가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우리의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 촉진을 활성화하고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일본의 입법례를 조사·분석하여 우리의 경제 성장 동력인 중소기업과 농어업의 육성·지원이 상호 유기적으로 그리고 복합적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제2장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농어업과 중소기업 관련 법령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서술하고, 제3장에서 일본의 농상공 등 연계의 의미와 법률의 주요내용 그리고 농상공 등 연계

사업의 내용과 각종 연계지원사업의 종류 및 그 절차, 보조비율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 우리나라의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법제적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와 촉진을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중소기업과 농어업을 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각각의 경영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중소기업의 경영 향상 및 농어업의 경영개선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강화에 의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 키워드 :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 산업 간 연계지원, 연계지원 방안

Abstract

As economy diversified, and trade without the border advanced, I came to bring a change in the industry. Such a change becomes more active in a market being opened. And I grope for the method that I cooperate mutually across the wall between the industry, and can plan activation of improvement and the regional economy of the economy from different angles. One of such grope can be said to be duties agreement of agriculture and forestry fisheries Processed Foods Division and the medium and small-sized business center meeting. There is the meaning these duties agreement is beyond a category pro-existing industry and accomplished cooperation with the other industry.

However,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cooperation between industries and to get it over in the competitive edge strengthening of the revitalization of the rural economy and the country. Various and system designs to promote cooperation and this between better industries are requested. Legislation is necessary for it to advance cooperation and the promotion between industries through the governance. Moreover, it is necessary to make the support measures to which the agriculture fishery and the trader of th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can receive the profit immediately when the system is constructed and operated.

The purpose exists so that this research may derive the method by which the promotion and the support of the agriculture fishery can develop mutually and organically with th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in South Korea by investigating the example of legislation of Japan where activation is advanced and analyzing cooperation and the promotion between the agriculture fishery and th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Korean agricultural fishing, present state of the law about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problem are being described by Chapter 2, and the meaning of the Japanese agricultural fishing and coopera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e main contents of a law, the contents of cooperation business during industry, the kind of various cooperation support business and the procedure are being introduced by Chapter 3. And, the cooperation between the agriculture fishery and th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in South Korea is presented and the method of promotion is presented in Chapter 4.

Resources on business where of each has the agriculture fishery combining and organically jointly with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that obtains it through cooperation and the promotion between the agriculture fishery and th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can be used for. Moreover, it is possible to contribute to the people's economic development by the competitive edge strengthening of the revitalization of the rural economy and the country through the management improvement of th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and the improved management of the agriculture fishery.

※ Key Words : Cooperation between agriculture, fishery,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Coordinated support between industries, Method of coordinated support

목 차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 1 장 서 론	1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제 2 절 연구의 범위	12
제 2 장 우리나라 농어업과 중소기업 관련 법령 현황과 문제점	15
제 1 절 농어업 관련 법령 현황	15
1.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15
2.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17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8
제 2 절 중소기업 관련 법령의 체계와 현황	24
1. 중소기업 관계법령의 체계	25
2. 주요 중소기업 지원 관련 법령 현황	27
제 3 절 현행 농어업과 중소기업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32
제 3 장 일본의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	35
제 1 절 농상공 등 연계강화	35

제 2 절 농상공 등 연계 촉진법	39
1. 농상공 등 연계촉진법	39
2. 농상공 등 연계 촉진법 제정이유	40
3. 법률제정의 목적 및 주요내용	41
제 3 절 농상공 등 연계촉진법의 지원제도	54
1. 중소기업신용보험법의 특례(제8조)	55
2. 소규모 기업자 등 설비도입자금조성법의 특례(제9조)	56
3. 식품유통 구조개선 촉진법의 특례(제10조)	56
4. 농업개량자금조성법, 임업·목재산업 개선자금조성법, 연안어업 개선자금조성법의 특례(제11조~제13조)	57
5. 과세 특례(제14조)	58
제 4 절 농상공 등 연계대책 지원사업	59
1. 사업화·시장화 지원사업	59
2. 연계체 구축 지원사업	59
3. 농상공 등 연계지원책	63
제 5 절 농상공 등 연계 활성화 방안	88
1. 농림수산업과 상공업과의 연계에 의한 마케팅 강화	88
2. 상품가치 향상을 위한 방안	90
3. 농상공 등 연계를 활성화를 위한 경영 강화 방안	92
4. 구체적인 정책	94
제 4 장 우리나라의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강화 방안	101
1.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촉진 방안	101
2.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촉진 입법체계	103
3.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촉진 주요내용	104

4. 결 론	106
참 고 문 헌	107

【부 록】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와의 연계에 의한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	111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와의 연계에 의한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0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와의 연계에 의한 사업 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농업자 등이 실시하는 농업개량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 등을 정하는 성령	136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외시장이 개방(FTA, DDA 등)됨에 따라 정부는 농어업종사자를 위하여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2년부터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무역협상과 세계 농어업 여건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보게 되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 그리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등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중장기계획을 발표하여 그 실시계획을 제시하고 있다.¹⁾

또한 중소기업은 그 수가 300만 개를 넘어 총 사업체의 99%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경제의 뿌리를 이루고 있다. 그런 만큼 중소기업 육성책도 정책 자금지원, 기술·인력·판로지원, 정보화 지원, 창업 지원, 벤처기업지원, 소상공인 지원, 세제지원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또한 현행 중소기업 관련 법률상에 있어서도 「중소기업기본법」을 축으로 하여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을 제정하여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²⁾

그러나 이와 같은 각각의 조치는 농수산식품산업과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공동발전, 그리고 농어업과 중소기업의 경영자원 활용을 통한 사업 활동의 상생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농어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동반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1) 김태완 “대외시장 개방과 농어촌지역 지원관련법률 비교분석”, 보건복지포럼, 2007.8, 36면

2)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요”, 세라미스트 제11권제2호, 2008.4, 65면

따라서 중소기업과 농수산물산업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고 중소기업의 경영향상 및 농어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농림수산물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농어업식품산업 및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공동발전을 위해 2009년 10월 13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³⁾ 이 업무협약의 체결목적은 농어업·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구축,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마련 및 농림수산물부와 중소기업중앙회와의 협력적 체계 구축 등으로 협력내용 및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농수산물 직거래 체계 마련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지원, 농림수산물 관련 녹색 중소기업 발굴·육성, 공동연구 및 정책 협의체 구성 그리고 농림수산물 관련 국내·외 전시회 및 박람회 등 참여·협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체계 형성에 있어 주목할 사항은 우리의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 즉 산업 간의 연계가 아기 걸음마와 같이 시작 단계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의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 촉진을 활성화하고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일본의 입법례를 조사·분석하여 우리의 경제 성장 동력인 중소기업과 농어업의 육성·지원이 상호 유기적으로 그리고 복합적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이 연구는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 간의 연계에 의한 사업 활동의 촉진에 관하여 일본의 입법례를 분석하고, 산업 간 연계 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지원책 등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3) 이에 관하여 자세히는 농림수산물부 보도자료 참조 <http://www.miaff.go.kr>

일본에서 산업 간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로서는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와의 연계에 의한 사업 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과 『기업입지촉진법 개정안』의 관련 2법이 있다. 여기서 전자는 국가로부터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신상품과 신서비스의 개발 등에 관해서 계획인정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에게 사업자금의 대부와 설비·기계취득에 대한 세제 등의 지원을 창설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양자의 관계 형성을 시행하는 공익법인, NPO법인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후자는 도도부현자사로부터 기업입지 또는 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농림수산 관련 산업의 기업입지에 대한 세제, 그리고 소규모 기업의 설비투자예의 무이자융자, 식품유통 관련 사업자금의 채무보증 등의 지원을 추가한 사항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법률 중 본고에서는 산업 간 연계촉진에 관한 사항을 거버넌스 측면에서 접근하고 또한 그 활성화 방안으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여 지원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와의 연계에 의한 사업 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에 초점을 두어 일본에서의 산업 간 연계촉진을 위한 법제도적·정책적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다.

농림어업자와 중소기업자 간의 산업 간 연계·촉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는 제2장에서 농상공 등 연계의 의미와 법률의 주요내용을 다루고 제3장에서 농상공 등 연계사업의 내용과 각종 연계지원사업의 종류 및 그 절차, 보조비율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 우리의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법제적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 즉 산업 간의 연계와 촉진을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중소기업과 농어업을 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각각의 경영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중소기업의 경영 향상 및 농어업의 경영개선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강화에 의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장 우리나라 농어업과 중소기업 관련 법령 현황과 문제점

제 1 절 농어업 관련 법령 현황

농어업 관련 법제는 2009년 12월 현재 약 60여개의 법령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다. 이러한 법령은 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및 농산어촌의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는 것에 특성이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법령 중에서 특히 대외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농림어촌 혹은 농림어업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응하고 지원하기 위한 주요 법령으로서 크게 3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즉 첫째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둘째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그것이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법률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시 되어야 할 부분을 살펴보고자 함에 있다.

1.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1) 제정이유

이 법은 한국과 칠레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 등에 따라 발생하는 농어업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2004년 3월22일 법률 제7207호로 제정되어 동년 4월1

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2) 주요내용

이 법의 주요내용을 분석하면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다. 즉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농어업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함과 아울러 원활한 구조조정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조)는 것이다.

둘째는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종류를 법률로써 명시하고 있다. 즉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라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영농·영어규모의 확대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 농어업인 등에 대한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어려운 품목에 대한 폐업지원금 지급, 가격이 하락하거나 하락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한 수매 비축 및 가공 지원, 매출이 감소한 농수산물가공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방법으로 지원(제4조부터 제9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지원 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어업인 등에 대해서는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수산업발전기금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제10조).

넷째, 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 및 피해 최소화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소속하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제16조).

2.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1) 제정 이유

이 법은 도시지역과 농산어촌지역의 소득수준 및 생활수준의 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 및 세계무역기구 농산물협상의 진전으로 농림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범정부차원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농림어업인의 복지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4년 3월5일 법률 제 7179호로 제정되었다.

(2) 주요내용

이 법의 주요내용을 분석하면 6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정부는 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제5조 및 제6조).

둘째, 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심의하며, 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제10조).

셋째, 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즉 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농림어업인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지원, 농림어업인의 영유아 자녀 보육비 지원, 농산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지원, 고령 농림어업인의 은퇴 후 생활안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제12조부터 제19조).

넷째,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농산어촌학교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제20조부터 제28조).

다섯째, 농산어촌 지역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즉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농산어촌 경관의 보전, 향토 산업의 진흥, 농산어촌 정보화의 촉진, 문화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제29조부터 제34조).

여섯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근 마을을 하나의 권역으로 하여 주거환경의 개선,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주민소득 증대 등에 관한 농산어촌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8조).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제정이유

이 법은 자유무역협정 등 경제개방의 확대와 농어업인 고령화 등에 대응하여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어업 경영주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체인 농어업인,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어업회사법인에 대한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소득안정 직접지불제

의 도입 등 맞춤형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 후계인력을 양성하며, 농어업 경영의 규모화 및 농어업법인의 설립을 지원하는 한편, 농어업회계기준 마련 및 선도적 농어업 경영모델의 확산 등 농어업의 경영혁신 기반을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2009년 4월1일 법률 제962호로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다.

(2) 주요내용

이 법의 주요내용을 분석하면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각 그 이유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을 하고 있다(제4조부터 제8조까지). 즉 지금까지 농어업생산 효율화 및 소득안정 지원정책의 대상을 모든 농어업인으로 함에 따라 재원이 분산되고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농어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농어업, 농어촌에 관련된 자금 융자, 보조금 지원 등을 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에게 생산수단, 생산농수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어선·양식시설 등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관계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등록 제도를 통하여 확보된 농어업경영정보를 기초로 효율적인 농어업정책의 추진과 맞춤형 지원을 통한 농어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후계 농어업인력의 양성과 경영 규모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이와 같은 규정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젊고 유능한 미래 농어업인력을 확보하여 교육하고, 발전단계에 따라 적합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에 기인한다.

따라서 미래 농어업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학교 농어업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하여 발전단계에 따라 자금, 컨설팅 또는 농어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경영규모 확대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젊고 유능한 신규 농어업인력 확보와 농어업 구조의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도입을 마련하고 있다(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수입농산물 증가로 농업생산액과 농가소득의 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현재 과수, 쌀 등 품목별로 추진되어 온 소득보전직불제를 농업경영체 단위 소득안정직불제도로 개편할 필요가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직접지불금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 등에는 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농업경영체 단위의 직접지불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농업경영체의 소득안정으로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경영혁신 및 농업투자 등이 가능하게 되어 농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농어업법인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30조). 이러한 규정은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제도와 「수산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영어조합법인 제도를 이 법으로 이관하고

농어업회사법인 제도를 신설하여, 농어업법인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을 총조합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명·합자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의 설립·지원 근거 및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대한 투자 확대, 경영규모화와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섯째, 농어업경영혁신 기반 구축을 위한 조치를 정하고 있다(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이러한 조치는 농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어업 회계·교육 및 전문컨설팅,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등 농어업경영체의 경영·기술역량 강화에 필요한 제도적·조직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법에서는 농어업경영의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회계기준, 전문적인 농어업기술·경영교육 및 컨설팅 등을 위하여 전문농어업경영인과 농어업인단체에 대한 교육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업교육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며,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농어업인재 개발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선도적 농어업경영 모델을 확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 규정은 농어업경영혁신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농어업경영체의 경영혁신 정책을 효율적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농어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으로 살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농어업인 지원 주요 법률 비교>

법률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목적	-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개선 -농산어촌의 종합적·체계적 개발촉진	-FTA협상에 따른 농림어업인 및 농산어촌지역 지원	-경쟁력 있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직불제 시행
적용대상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 등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
관련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기본계획수립(정부) -시행계획수립(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수립(지방자치단체장) -농산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 수립·시행(국가·지방자치단체)	없음	-농어업교육 계획
사업내용	-농산어촌 향토산업 -도시와 농산어촌 교류 확대 사업 -농산어촌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 -농산어촌 거점지역 육성 사업	없음	-학교 등 농어업교육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농어업경영규모화 -선도적 농어업경영모델 선정 및 확산
지원내용	-재정지원 · 시행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 시행 -농산어촌 향토산업 · 특산품등의 조사·발굴 및 권리보호에 관한 지원 · 특산품등의 상품화를	-보조·융자 · 농지구입·임차 등 영농·영어규모의 확대 · 용수공급·배수로·경작로 등 생산기반시설의 정비 · 우량종자의 공급 등 고품질 농수산물의 생	-보조금 · 학교 등 농어업교육 · 농어업 관련 실습교육 또는 농어업 창업교육 지원 · 농어업현장 연수에 필요한 지원 -후계농어업경영인

	<p>위한 기술의 개발에 관한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산품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상표·포장 등의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지원 · 특산품등의 생산자 및 판매자에 대한 자금의 지원 · 특산품등의 생산기술의 전수·계승 및 이와 관련된 인력육성의 지원 · 그 밖에 향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p>-농산어촌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p>산촉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농수산물의 생산·유통촉진 · 농수산물 유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 · 품종개발·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 그 밖에 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경영안정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보전직접직불금 <p>-폐업지원</p> <p>-생산자단체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단체의 수매·비축 및 가공지원 <p>-농수산물가공업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p>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 컨설팅, 농업 기술, 경영교육 등 <p>-농어업경영 규모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 양식장, 어선, 농어업용 시설의 매매 지원 및 알선·중개 <p>-농업법인 및 어업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기술개발, 경영규모의 확대, 농어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확보 및 인수합병 등을 위한 자금 및 컨설팅 등 <p>-농어업인단체 등의 교육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 ·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농어업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지원 <p>-선도적 농어업경영모델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경영체 간 상호교류활동 및 농어업인 교육활동 등 지원 <p>-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	--	---

재원	농어촌특별세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 기금 -수산물전기금	
----	--------	------------------------------	--

이와 같이 농어업 관련 법제 현황, 그것도 대외시장 개방에 따른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법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법률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의 분석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은 농어업이라는 1차 산업에 대한 지원을 정부에서 다방면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와 같이 종래의 농어업인에 대한 보조·융자 또는 향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에서 경영체라는 범위로 그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에 있어서도 법인의 경영규모 확대 및 전문 인력 확보 등을 위한 컨설팅 등 소프트면에서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오늘과 같이 경제가 다양하게 변화하는 과정에 있어 농어업, 광의로는 농림수산업의 활동을 1차 산업으로만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산업의 활동을 통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관련자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산업의 촉진 방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후술하겠다.

제 2 절 중소기업 관련 법령의 체계와 현황

현행 중소기업 관련 법제는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심으로 약 37개의 법령이 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법령과 더불어 중소기업 육성책도 정책 자금지원, 기술·인력·판로지원, 정보화 지원, 창업지원, 벤처기업지원, 소상공인 지원, 세제지원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실시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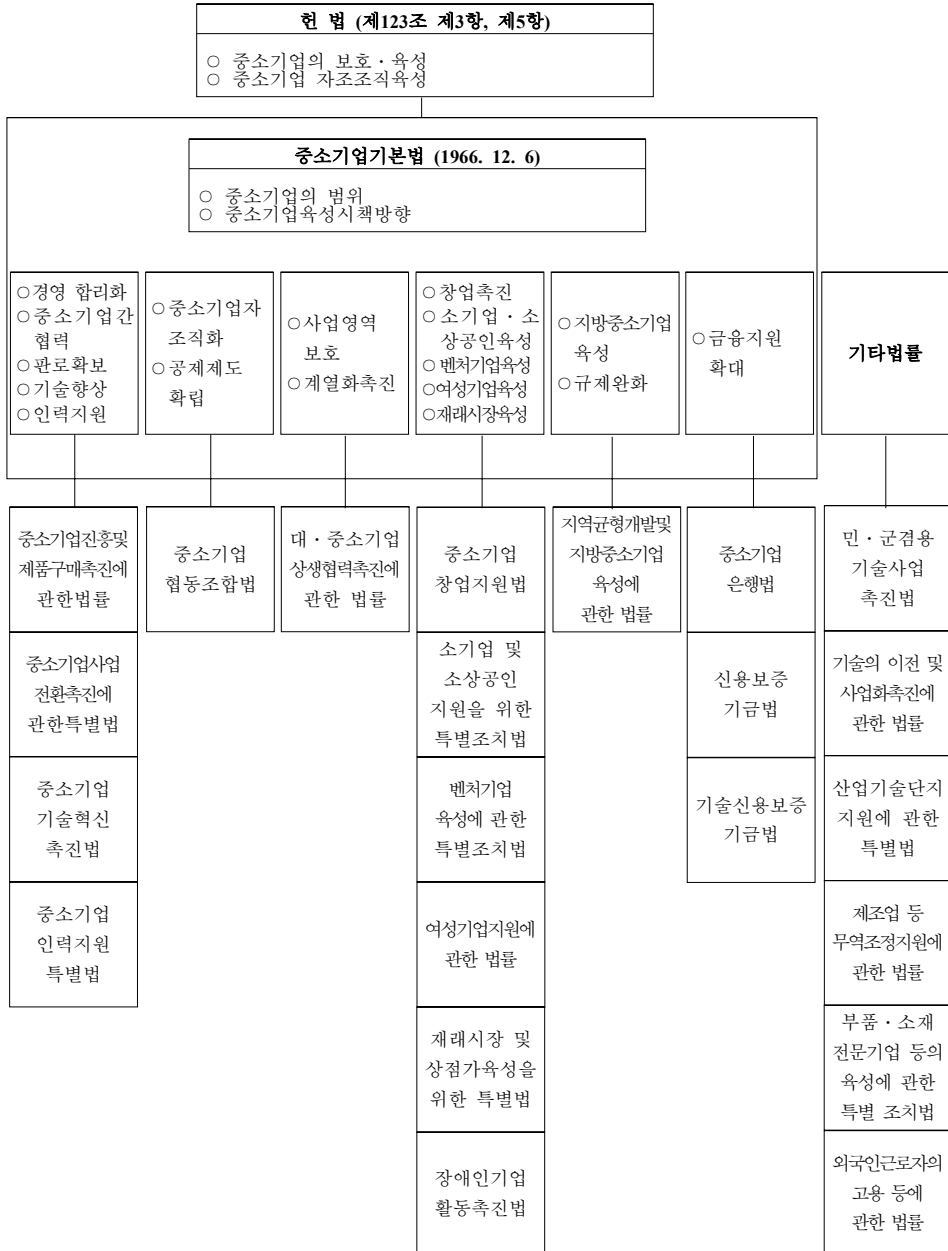
있다. 이러한 법·제도적 조치는 중소기업수가 300만 개를 넘어 총 사업체의 99%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경제의 뿌리를 이루고 있음에 기인한다. 이하에서는 현행 중소기업 관련 법령의 체계에 관하여 살펴보고, 본고와 관련이 있는 지원법 중 주요 법령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받게 되는 우대·지원 내용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각종 법령 및 제도를 통해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내용이 한정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1. 중소기업 관계법령의 체계

중소기업을 직접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및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령은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심으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은행법」,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이 있다. 이러한 법령체계는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창업 촉진, 판로 확보, 중소기업자의 조직화 등 각종 시책 등을 개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형태로 분화, 발전되어 왔다.⁴⁾

4) 최환용,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동아시아 법제의 비교와 과제」,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법제의 문제점과 과제』, 2008. 6, 117면

<중소기업 관계법령 체계>



출전) 최환용,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법제의 문제점과 과제”, 2008.6, 118면 재인용

2. 주요 중소기업 지원 관련 법령 현황

(1) 중소기업사업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1) 제정이유

이 법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에서 새로운 업종의 사업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전환절차를 간소화하고 자금지원, 컨설팅지원 등 정책수단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조정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2006년 3월 법률 제7866호로 제정되어 동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2) 주요내용

이 법의 주요내용을 분석하면 3가지로 분류하여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소기업자의 원활한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정하고 있다(제4조 및 제5조).

둘째, 사업전환절차의 간소화를 명시하고 있다(제12조부터 제20조). 즉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식교환, 합병, 분할, 분할합병, 영업양수·양도에 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셋째,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제공, 컨설팅, 유희설비 유통 등 지원기반을 구축하고, 승인기업에 대하여 용자·출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 등 자금지원, 공장 신설 등 입지관련 지원, 조세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른 세제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1조부터 제29조).

(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특별법

1) 제정이유

이 법은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과 정보화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제·재정지원 및 신용보증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술력이 우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2) 주요내용

이 법의 주요내용을 분석하면 6가지로 분류하여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동 계획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제5조 및 제6조).

둘째,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진흥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기술진흥전문기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수요조사, 연구·기획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의 평가·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7조).

셋째,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자금 지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해외규격획득 및 품질향상 지원 등의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조).

넷째, 중소기업 정보화촉진 관련기술의 보급 및 평가를 위하여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을 설립하고, 중소기업정창은 대학·연구소·연구조합 및 업종단체 등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기술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중소기업기술연구회를 구성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제20조 및 제24조).

다섯째,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과 정보화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제·재정지원 및 신용보증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중

소기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제27조).

여섯째, 기술혁신지원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개발성과를 이용하는 사업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동 기술료는 이 법에 의하여 출연하는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제28조).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

1) 개정이유

이 법은 소기업 지원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종래 시행되어 왔던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명을 수정하여 소기업의 범위를 확대·조정하고,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근거 및 수단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2000년 12월 법률 제6314호로 일부 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2) 주요 내용

이 법의 주요내용을 분석하면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으로 국한된 소기업의 범위를 소·도매업, 음식업 등을 포함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기업으로 확대·조정하고,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10인 이하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소상공인으로 정의하고 있다(제1조 및 제2조).

둘째,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서 수행하는 소기업에 대한 지원계획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계획에 대한 조정 및 평가를 중소기업청장이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제3조).

셋째, 주식회사가 아닌 소기업을 주식회사로 전환하거나 소기업인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법인설립요건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 법인전환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다(제8조의2).

넷째,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청장으로 하여금 각종 지원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있다(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 제정 이유

이 법은 우리 경제의 양적 성장을 뒷받침하여 온 대기업 중심의 대규모생산방식으로는 경제활동의 회복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한계가 있어 기존 중소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새로운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는 한편, 벤처기업에 대하여 금융·인력·기술·입지 등 생산요소들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여건을 개선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벤처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1997년 8월에 법률 제5381호로 제정되었다.

2) 주요 내용

이 법의 주요내용을 분석하면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해당 기업 자본금의 일정 비율이상을 투자한 기업, 연간 총매출액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의 비율이 일정 비율이상인 기업, 특허 및 실용신안 등의 기술을 주된 부분으로 사업화하는 기업 등으로 하고 있다.

둘째,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조달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기금의 관리자는 당해 기금의 운용계획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인·허가 없이 바로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포함하여 개인 또는 조합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넷째,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인력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국·공립대학의 교수 및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동 기업의 임원으로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하여 고급기술인력이 벤처기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섯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전용단지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그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공립대학의 교지 등 국·공유자에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영구시설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1) 제정이유

이 법은 한정된 국토를 보다 경제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기 위하여 지역 간 균형 있는 개발을 촉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므로, 지역별 특성에 맞도록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방대도시와 대규모공업단지는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광역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거점으로 발전시키고,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1994년 1월에 법률 제4722호로 제정되었다.

2) 주요내용

이 법의 주요내용을 분석하면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방대도시와 그 주변지역, 공업단지와 그 배후지역 또는 여러 도시가 상호 인접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 등을 광

역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지역을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광역개발권역이 지정되면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광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되 다른 개발계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시·도지사는 매년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상공자원부장관은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 조성의 지원 등을 통하여 시·도지사가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넷째, 지방중소기업과 대학 중 연구기관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관련 법령 그것도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주요 법령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법령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의 분석에 의하면 크게 경영 합리화, 기술향상 등에 관한 사항, 창업촉진, 소기업·소상공인 육성, 벤처기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방의 중소기업육성과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으로 분류하여 지원·육성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재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전술에서도 서술한바와 같이 중소기업 관련 종사자의 경쟁력 제고 및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이하에서 서술하기로 하겠다.

제 3 절 현행 농어업과 중소기업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현행 우리나라의 농어업과 중소기업 관련 법제도적 조치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경제 활동이 다양화됨에 따라 각종 산업구조 또한 기존의 범위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구조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어업을 1차 산업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농어업의 제 활동은 생산력 향상을 위한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둘째, 농어업과 관련된 각종 지원 제도가 대외시장 개방에 따른 경제적 위기의 대응방안으로 마련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농어업 관련 산업 및 관계자는 스스로가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농어업 생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타의적인 지원조치에 의존하게 된다. 이것은 결국 농어업 및 관련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연결된다고 하겠다.

셋째, 중소기업과 관련된 각종 지원제도의 복잡성에 의해 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법령의 다양성과 복잡성에 따른 결과로 여겨진다. 그러나 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 등이 이용하기 쉬운 지원체계가 이루어져야 중소기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 문제는 산업 간의 연계 내지는 협력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오늘과 같이 시장 경제가 다양화되고, 글로벌 경제체제를 형성해 가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 당해 산업 내에서의 연계는 물론 다른 산업과의 연계 내지는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여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산업 구조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 중에서-특히 본고와 관련하여-그것도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를 통한 경쟁력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 이하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를 통한 경쟁력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법제도적으로 정비하여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그것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제 3 장 일본의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

제 1 절 농상공 등 연계강화

1. 농상공 등 연계의 의의와 경위

(1) 농상공 등 연계의 의미

농림어업자와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의 개발 등과 관련된 계획에 대해 국가가 인정을 실시하여 이 계획에 근거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정부계 금융기관에 의한 저리 융자, 신용보증의 특례 등 지원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농림어업과 상공업 등 산업간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 기반 정비 기구는 지역 활성화 지원 사무국을 설치하고, 농상공 연계에 임하는 농림어업자와 중소기업자의 사업 계획 작성에서 인정 후의 실행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이다.⁵⁾

(2) 농상공 등 연계 촉진

2007년 11월 일본정부는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방 재생전략』(2007년 11월 지역경제 활성화 통합본부 결정)을 수립하였다. 이 전략 중에서 지방의 과제·실정에 맞는 대응책을 강구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림수산업자와 상공업자와의 연계에 의한 지역산업 재생이 중요한 시책으로 대두되었다.⁶⁾ 일본의 농림수산업은 식품 관련 산업이나 관련 기기 설비의 제조업 등에 파급효과가 큰 지역의 기간산업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5) <http://www.smri.go.jp/noshoko/indx.html>

6) 成長力底上げ戦略構想チーム “成長力底上げ戦略(基本構想)”, 2007. 2, 4면

관로 개척이나 소비자 요구에의 대응 등에서 그 강점을 반드시 발휘되어 있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또한 지역의 상공업자는 제조나 판매에 관한 독자적인 노하우나 기술 등을 축적하고 있으나, 최근의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 비즈니스 영역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전개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농림수산업자와 상공업자가 각각 가지고 있는 경영자원을 상호 연계하여 신상품·신서비스 개발 등을 통하여 자원의 이익 활용을 향상시키고, 농림수산업자·상공업자의 경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림수산성과 경제산업성은 「농림수산업·상업·공업 등 산업 간의 연계(농상공 연계) 촉진 등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공표하고, 농상공연계 관련 2법의 제정 등 각종 지원 시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2008년 9월에 각의 결정된 「신경제성장 전략 2008 개정과 포로 업」에서도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의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상공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였다.⁷⁾

(3) 농상공 연계 관련 예산

농상공 연계 촉진에 관한 지원 조치로서 농림수산성과 경제산업성은 2008년도 양성 각각 약 100억 엔, 합계 200억 엔 이상의 농상공 연계 관련 예산을 계상했다. 이것은 농림어업자와 상공업자 개개의 농상공 연계 방안에 대하여 지원한다. 농상공 등 연계 촉진법을 중심으로 그 기반이 되는 기술개발, 인재육성, 매칭지원 등에의 지원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농림수산성에서는 식료 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국산 농림수산물을 활용한 신상품 개발·관로 개척 등에의 지원이나, 지역 전체로 지역에서 생산된 다양한 제품을 당해 지역에서 소비하는 모델 타운의 정비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7) 農商工連携研究会 “農商工連携研究会報告書”, 2009. 7, 5면

경제산업성에서는 각 지역의 『강점』인 농림수산품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신상품 개발·시장화 지원과 농림수산품을 원재료로 한 신상품개발을 목표로 한 연구 개발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09년도에는 신상품·신서비스 개발과 지역 산품의 국내외 판로 개척 등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농상공 연계 관련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하고 경제산업성·농림수산성 합해 약 334억 엔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다. 또한 2009년도 제1차 보정 예산안에서 농림수산성·경제산업성에서는 고도의 환경 제어에 의한 야채 등의 주년·계획 생산을 실시하는 식물 공장의 보급·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 외에 경제산업성에서는 국내외 시장의 판로 개척지원을, 농림수산성에서는 신상품의 판로 개척에 대한 지원 및 지역의 자원인 농산물을 활용한 신상품 등의 본격적인 사업화를 위한 시설 정비에 농상공 연계 관련 예산을 포함시키고 있다.⁸⁾

(4) 보급·홍보활동 상황

농상공 연계를 추진함에 있어서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및 관련 상공업자는 물론, 지방공공단체 등의 관계자, 일반소비자에게 보급·홍보를 통해 그 취지에 대한 이해를 얻고, 협력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농림수산성 및 경제산업성에서는 2007년도부터 지역 산품의 PR과 국산 농림수산 품의 소비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대신, 경제산업대신을 시작으로 간부 가 현장방문이나 톱 세일즈를 실시하고, 소관 하는 업계단체나 소비자등에 대해서 농상공 연계가 국민적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가 실제로 농상공 연계에 임하는 계기가 되도록 농림수산성과 경제산업성은 2008년 4월에 농상공 연계 선진 사례를 『농상공 연계 88선』으로 선정하여 표창을 실시했다.

8) 農商工連携研究会 “전계”, 6면

그리고 농상공 연계를 전국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2008년 6월에 수상관저에서 『농상공 연계 서미트』를 개최하여 총리대신 이하, 농림수산대신, 경제산업대신 등 관계 각료, 전국 농업 협동조합 중앙회, 일본 경단련 등 관계단체가 모여 농상공 연계 추진을 위해서 관계자가 협력해 나가는 것으로 일치를 보았다. 동년 7 월에는 『농상공 연계 포럼』을 개최하여 500명 이상의 관계자가 참가했다.

농상공 연계를 지역 마다 자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으로 지방농정국, 경제 산업국, 도도부현, 상공회의소·상공회, JA 등 관계기관이 연계하여 전국 9지역에서 각각 『농상공 연계 블록 협의회』를 설립했다. 각 지역의 농상공 연계 블록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2009년 3 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농상공 연계 포럼이나 세미나가 약 43회 개최되었으며 총 5000명이 참가했다.⁹⁾

(5) 지역에서의 농상공 연계 침투와 다양화

농상공 연계에 대한 이해가 침투함에 따라서 지방공공단체를 시작으로 지역의 관계자가 농상공 연계에 임하는 움직임이 펴지고 있다. 농상공 연계는 국가의 시책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넘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컨셉으로서 보다 저변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지지하기 위하여 독립 행정법인 중소기업 기반 정비 기구는 각 도도부현이 지역의 특징과 강점을 살려 농상공 연계에 대한 구체적인 조성내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농상공 연계형 지역 중소기업 응원 펀드』로써 총 500억 엔 정도의 자금규모를 확보해 도도부현에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코치현(高知縣)에서는 2008년 6월에 펀드 제1호 안건으로서 『코치 농상공연계 기금』을 조성하여 현내(縣內)의 특색 있는 농림수산물을 활용한 신상품 개발, 판로 개척 등에 지원을 실시하고 있

9) 農商工連携研究会 “전계”, 7면

다.10) 2009년 5월 현재, 전국에서 22개 도현이 농상공 연계형 지역 중소기업 응원 펀드 창설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지역 관계자 스스로가 농상공 연계에 임하는 움직임이 각 지역에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농상공 연계도 보다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농업·임업·수산업자와 식품 제조업, 음식점 등 관련 산업과 연계하여 매상 정보, 고객 정보, 생산 전망의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계약재배나 전매 계약 등 사업 연계로 전개해 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동 기업체 설립, 자본 출자, 인재 파견·교류 등 경영면에서의 연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인 연계는 기술이나 노하우, 인재라고 하는 경영 자원의 공유·축적을 가능하게 하여 각각의 사업레벨 향상에 활용하고 있다.11)

제 2 절 농상공 등 연계 촉진법

1. 농상공 등 연계촉진법

농상공연계 촉진을 위한 시책으로서 2008년 5월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와의 연계에 의한 사업 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안(농상공 등 연계 촉진법)」이 제정되어 동년 7월에 시행되었다.

농상공 등 연계 촉진법에서는 중소기업자와 농림 어업자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 개발 등 계획 인정을 받았을 경우에 사업자금의 대출이나 채무보증, 설비·기계 취득에 대한 세제 등의 지원, 사업과 관련되는 경비보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지원조치에 의해 농림수산성과 경제산업성은 2009년 3월 현재 185건의 농상공 등 연계 사업 계획과 5건의 농상공 등 연계 지원

10) <http://www.pref.kochi.lg.jp/>

11) 農商工連携研究会 “전계”, 8면

사업 계획을 인정하고 있다.¹²⁾

2. 농상공 등 연계 촉진법 제정이유

일본에 있어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 간의 연계에 의한 사업 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농상공 연계 촉진법”이라 한다)이 제정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기업규모와 업종, 지역에 따른 경제 격차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활력 있는 경제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경제의 중핵을 형성하는 농림수산업과 상업, 공업 등 산업 간의 연계(이를 “농상공 연계”라 한다)를 강화하여,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구축이 요구되었다.

둘째, 이러한 관계형성을 위해서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가 1차, 2차, 3차 산업의 벽을 넘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상호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기술 등을 활용하여 양자의 강점을 발휘한 신상품 개발과 판로개척 등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법제도적 조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셋째, 이와 같은 배경과 관점 하에 정부에서도 농림수산성과 경제산업성이 하나가 되어 중소기업자와 농림수산업자 간의 연계를 응원하고 각각의 강점을 살린 사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농상공 연계 촉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법률제정의 목적과 주요내용 등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¹³⁾

12) 이에 관해서는 일본의 경제산업성 중국경제산업국 <http://www.chugoku.meti.go.jp> 및 농림수산성 <http://www.maff.go.jp/j/press/soushoku/sanki/081225.html> 참조

13) 經濟産業省 中小企業庁 経営支援部 “中小企業者と農林漁業者との連携による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法律案”, 2008. 2

3. 법률제정의 목적 및 주요내용

(1) 법률제정의 목적

중소기업자¹⁴⁾와 농림어업자¹⁵⁾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각각의 경영자원¹⁶⁾을 유효하게 활용하는 사업 활동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향상 및 농림어업경영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세제·금융 등 종합적인 지원조치를 강구함에 있다.

14) 이법에 있어서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제1항).

1. 자본금 액수 또는 출자의 총액이 3억엔 이하의 회사 및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300인 이하의 회사 및 개인으로서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그 밖의 업종(다음 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종 및 제5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에 속하는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것
2. 자본금 액수 또는 출자의 총액이 1억엔 이하의 회사 및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00인 이하의 회사 및 개인으로서 도매업(제5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에 속하는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것
3. 자본금 액수 또는 출자의 총액이 5000만엔 이하의 회사 및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00인 이하의 회사 및 개인으로서 서비스업(제5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에 속하는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것
4. 자본금 액수 또는 출자의 총액이 5000만엔 이하의 회사 및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50인 이하의 회사 및 개인으로서 소매업에 속하는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것
5. 자본금 액수 또는 출자의 총액이 그 업종마다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회사 및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그 업종마다 정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회사 및 개인으로서 그 정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것
6. 기업조합
7. 협업조합
8. 사업협동조합, 사업협동소조합, 상공조합, 협동조합연합회 그 밖의 특별히 법률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그 연합회로서 정령으로 정한 것

15) 이 법에 있어서 농림어업자라 함은 농업자, 임업자, 어업자 또는 이러한 자가 조직하는 단체를 말한다(동조 제2항).

16) 이법에서 경영자원이라 함은 설비, 기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 및 기는 그 밖의 사업 활동에 활용되는 자원을 말한다(동조 제3항).

(2) 법률의 주요내용

1) 기본방침 책정

주무대신(농림수산대신, 경제산업성대신 등)이 농상공 등 연계사업 등 연계사업의 촉진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정해야 한다(제3조제1항). 또한 기본방침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제2항).

1. 농상공 등 연계사업의 촉진 의의 및 기본적인 방향에 관한 사항
2. 농상공 등 연계사업에 관한 다음 사항
 - 가. 농상공 등 연계사업의 내용에 관한 사항
 - 나. 농상공 등 연계사업의 실시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향상 및 농림어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 다. 농상공 등 연계사업의 촉진에 있어 배려하여야 할 사항
3. 농상공 등 연계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사항
 - 가. 농상공 등 연계 지원사업의 내용에 관한 사항
 - 나. 농상공 등 연계 지원사업의 촉진에 있어 배려하여야 할 사항

기본방침과 관련하여 일본은 농상공 등 연계 지원사업 및 그 사업계획의 인정기준 등을 정한 『농상공 등 연계 지원사업의 촉진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하여 2008년 8월20일 고시하였다. 이에 따라서 사업계획의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사업자는 신청한 계획에 대해 국가의 인정을 받아 보조금, 저리융자, 채무보증, 감세조치 등 각종 지원책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하 이 기본방침의 개요¹⁷⁾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17) 이에 관해서 자세히는 <http://j-net21.smrj.go.jp/expand/noshoko/law/index.html> 참조
鈴木真理子 “農工商等連携関連2法案の制定について”, 農業信用保証保険, 2008. 3

① 농상공 등 연계사업의 기본적 방향

농상공 등 연계사업은 중소기업자 및 농림어업자가 각각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경영자원이 유효하게 활용되지 않았으며, 신상품과 신서비스 개발 등의 실사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았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중소기업의 경영향상 및 농림어업경영의 개선을 도모하여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각각의 경영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여 신상품 개발, 생산 또는 수요개척, 신서비스 개발·제공, 수요개척 등을 실행하는 데 있다.¹⁸⁾

② 농상공 등 연계사업 지원 대상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농림어업자 이외의 사업을 실시하는 중소기업자에 한정한다. 다만, 농림어업을 실시하는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의 연계사업(농농(農農), 공공(工工) 및 상공 그리고 상상(商商) 연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농상공 등 연계사업의 인정기준

법 제2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농상공 등 연계사업은 이하는 요소를 충족할 필요가 있다.

가)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업일 것

법에서는 상공업 등을 하는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와의 연계에 의한 사업 활동이 상호의 성장·발전에 유효하다는 측면에서 양자의 연계에 의한 신상품 개발 등 새로운 가치 창조를 평가하여 촉진하기 때문에 농상공 등 연계사업을 실시하는 중소기업자는 농림어업 이외

18) 近畿經濟産業局 創業・経営支援課 “農商工連携の促進を通じた地域活性化について”, 2008. 8, 3면

의 사업을 실시하는 중소기업자에 한정한다.

따라서 농상공 등 연계 사업에 대해 농림어업을 실시하는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와의 연계에 의한 사업 활동(농농제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면, 농업과 식품 가공업을 실시하는 겸업농가가 실시하는 식품 가공업에 대해 다른 농업자와 연계하는 사업 또는 스스로가 실시하는 농업에 대해 다른 상공업자와 연계하는 사업은 지원 대상이 되지만, 스스로 실시하는 농업에 대해 다른 농업자와 연계하는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또한 농상공 등 제휴 사업에 있어 농가가 실시하는 식품 가공이나 식품 도매만 하는 중소기업자와의 연계에 의한 사업 활동(공공 제휴, 상공 제휴, 상상연계휴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한다.

그리고 외국에서 사업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라도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소재하고 국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의 향상, 농림어업자의 농림어업 경영개선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지원 대상으로 한다. 또한 농림수산물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생산된 것에만 한정한다(다만, 수산물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양륙된 것도 포함한다).

나) 양자의 경영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는 것

여기서 경영자원이란 설비, 기술,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 및 기능 그 밖의 비즈니스 노하우,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한 사업 활동에 활용되는 자원 일반을 가리킨다. 농상공 등 연계사업 계획의 인정에 있어서 해당 농상공 등 연계사업에 참가하는 각 주체의 강점인 경영자원을 구체적으로 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영향상 및 농림어업자의 농림어업 경영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자에게는 새로운 재료의 도입, 새로운 제조·가공 방법의 도입, 농림어업자에게는 새로운 품종의 도입, 새로운 재배 관리방법의 도입, 실수요자의 요구에 맞춘 로트나 스펙으로서의 출하, 목재 직송, 새로운 어

류의 선도 보관 유지방법의 채용 등이 있다.

다) 연계사업에 의한 신상품, 서비스 개발, 생산 및 수요 개척 등을 실시할 것

성과물인 상품·서비스에 관해서는 사업을 실시하는 중소기업자 및 농림어업자에게 현재까지 없던 새로운 상품 또는 서비스일 것이 필요하다. 또한 수요개척 전망이 필요하다. 또한 해당 상품·서비스와 결합하고 유사상품과의 비교에 의한 우위성·차별화 요소를 명확히 하여 수요개척의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해당 사업이 시장에서 사업으로서 성립되는 것인 것도 필요하다. 즉 구체적인 판매 활동이 계획되고 있는 등 사업으로서 성립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고, 향후에도 사업으로서 성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라) 중소기업자 및 농림어업자의 경영향상 제고에 이바지 하여야 할 것

중소기업의 경영의 향상 및 농림어업 경영개선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농상공 등 연계사업에 대한 지원 및 농상공 등 연계사업 계획의 인정에 있어 정량적인 경영 지표를 판단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으로서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생산요소 및 경영규모의 확대상황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경영 지표로서 이하의 두 개의 지표가 충족되어야 한다.

a) 부가가치액수

해당 사업자의 부가가치액수 또는 종업원 일인당 부가가치액수의 어느 하나에 관해서 계획 개시시점과 비교하여 5년간의 계획의 경우, 계획 기간 종료시점인 5년후 까지 5% 이상의 향상이 이루어 져야 한다. 다만, 계획 기간이 3년간의 경우는 3% 이상, 계획 기간이 4년간의 경우는 4% 이상의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b) 총 매출액

사업자의 총 매출액에 대해서 계획 개시시점과 비교하여 5년간의 계획의 경우, 계획 기간종료시점인 5년후까지 5% 이상 증가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 기간이 3년간의 경우는 3% 이상, 계획 기간이 4년간의 경우는 4% 이상 증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자의 총 매출액의 증가가 농상공 등 연계사업과 관련되는 신상품 또는 신서비스의 매상과 직결되어야 한다.

또한 농림어업자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물의 생산 또는 가공 등 사업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림어업경영을 실현하여 그 경영 기반의 강화 및 농림어업의 생산력의 증강의 상황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경영 지표로서 부가가치액수와 농림수산물의 매상 증가를 지표로 삼고 있다.

이 중에서 부가가치액수에 관해서는 전술한 중소기업의 경영 지표와 동일하나, 농림수산물의 매상 증가와 관련해서는 “해당 농상공 등 연계사업 계획에 있어서의 농림수산물의 매상액수가 계획 개시시점과 비교하여 5년간의 계획의 경우, 계획 기간 종료시점인 5년후 까지 5퍼센트 이상 증가하여야 하며, 계획 기간이 3년간의 경우는 3퍼센트 이상, 계획 기간이 4년간의 경우는 4퍼센트 이상 증가하여야 한다. 다만, 종래 취급하지 않은 신규 작물·가축 등을 도입하는 경우는 사업으로서 성립될 수 있는 매상액수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해당 사업의 실시에 있어서는 해당 사업의 수요개척의 전망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자 및 농림어업자의 영업 수지에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연합회, 어업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연합회, 삼림조합 및 삼림조합 연합회 등 그룹에 의한 신청에 대해서는 그룹 전체의 경영 지표 또는 참가자 개개의 경영 지표의 어느 하나를 이용”할 수 있다.

2) 농상공 등 연계사업의 촉진

농상공 등 연계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법에서는 두 가지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첫째는 전술한 바와 같이 농상공 등 연계사업¹⁹⁾의 인정이며, 둘째로서 농상공 등 연계지원 사업계획²⁰⁾의 인정이다. 이에 관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농상공 등 연계사업계획

가) 목 적

중소기업자의 경영향상 및 농림어업자의 경영개선에 있다.

나) 절 차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가 공동으로 신상품 개발에 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주무대신에게 신청하고, 주무대신이 신청 사업계획의 적합성을 판단하여 인정한다.

다) 농상공 연계사업의 기본적 요건

a) 유기적 연계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실시하는”이라 함은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한쪽이 보유하고 있는 경영자원을 상호 보완하여 양자가 연계사업기간 동안 주체적으로 참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유기적 연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규약이나 계약서 등에 있어서 연계사업의 목표, 경영자원의 상호 제공, 비용부담·손실분담·수익배분 및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 近畿經濟産業局 創業・經營支援課 “진계”, 5면

20) 近畿經濟産業局 創業・經營支援課 “진계”, 7면

b) 경영자원

각각의 경영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양자가 보유하고 있는 설비, 기술,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 및 기능 그 밖의 비즈니스 노하우, 지적재산 등이 본 사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 구체화될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

c) 신상품 개발

신상품개발 또는 신서비스 개발, 생산·제공 및 수요 개척을 실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요건에 있어 “신상품 또는 신서비스”라 함은 사업 실시주체에게 지금까지 개발, 생산된 적이 없는 새로운 상품 또는 서비스로서 당해 신상품·서비스의 수요개척에 관하여 시장에서 성공할 전망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d) 계획기간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한다.

e) 경영 향상·개선

중소기업의 경영향상과 더불어 농림어업자의 농림어업경영의 개선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자 및 농림어업자의 부가가치금액이 5년간 5%(계획기간이 4년인 경우는 4%, 3년인 경우는 3%)이상 향상되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자는 신상품·신서비스의 매상에 따라 총 매상이 5년에 5%(계획기간이 4년인 경우는 4%, 3년인 경우는 3%)이상 증가할 것이 가능하여야 하며, 농림어업자는 농상공 등 연계사업과 관련하는 농산물 등의 매상이 5년에 5%(4년인 경우는 4%, 3년인 경우는 3%)이상 증가하여야 한다. 다만, 종래 취급되지 않은 신규 작물 등을 도입하는 경우는 사업으로서의 가능성이 있을 만한 매상이 전망되어야 한다.

② 농상공 등 연계지원사업계획

가) 목 적

중소기업자와 농림수산업자와의 교류기능 제공, 중소기업자 또는 농림어업자에게 농상공 등 연계사업에 관한 지도, 조언, 그 밖의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와의 유기적 연계를 지원하는 데 있다.

나) 절 차

일정의 요건을 충족한 공익법인 및 NPO가 농상공 연계사업에 임하는 사업자 등에게 지도·조언 등 지원을 실시하는 계획을 작성하여 주무대신에게 신청하고, 주무대신이 신청 지원사업계획의 적합성을 판단하여 인정한다.

다) 농상공 등 연계지원사업의 기본적 요건

a) 사원총회에서 의결권·표결권 또는 설립 시 거출된 재산 가격의 2분의 1 이상을 중소기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사단법인·재단법인의 경우는 출자금액 또는 거출된 금액의 2분의 1 이상이 중소기업자에 의하여야 하며, 일반사단법인의 경우는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중소기업자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일반사단법인의 설립 시에 거출된 재산금액의 2분의 1 이상이 중소기업자에 의해 거출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NPO법인의 경우는 표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중소기업자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b) 중소기업자, 농림어업자, 상공회의소, 상공회, 전국 중소기업단체 중앙회 및 JA(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 JA전국 중앙회, 대학, 일반사단법인, 일반재단법인, NPO법인 등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

라) 사업의 내용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 간의 교류기회 제공, 중소기업자 또는 농림어업자에 대하여 농상공 등 연계사업에 관한 지도 또는 조언 그 밖의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지원한다. 이 경우 계획기간 내에 5년 이상 농상공 등 연계사업의 형성을 실현하거나 또는 5년 이상 농상공 등 연계사업에 대하여 지도·조언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자 및 농림어업자가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이상의 성과를 실현시킬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마) 계획기간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한다.

3) 그 밖의 규정

농상공 등 연계 촉진법에서는 전술한 규정 이외에 ①인정을 받은 사업자에게 국가에 의한 지도 및 조언(제16조), ②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와의 교류 또는 연계 추진, 연수, 정보제공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에 의한 실시(제15조) 그리고 ③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의 배려(제15조제2항)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

(3) 농상공 등 연계 촉진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종래 일본에서는 농림수산물에 관하여 농림수산물 자체를 상품으로 하는 것과 농림수산품을 활용한 상품으로 구분하고, 각각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에 따라 사업주체, 대상, 평가기준 등을 달리 해왔다. 예를 들면 농림수산물 자체를 상품으로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농업인 단독으로 농림수산품을 상품화하는 것에 대하여 『농림수산지원법』을

근거로 지원하여 왔으며, 농림수산품을 활용한 상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의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 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 지역자원 활용 촉진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지역자원 활용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을, 그리고 「중소기업의 새로운 사업 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 신사업 활동 촉진법”이라 한다)」에 근거한 지원을 실시하여 왔다.

이와 같이 농림수산품에 대한 지원 및 그 법률적 근거도 이중적 체계를 형성하였으나, 이미 소개한 바와 같이 2008년 7월에 「농상공 등 연계 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원적 법률체계를 형성하여 농림어업자와 중소기업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기존의 법률과 농상공 등 연계 촉진법과의 상이점에 대해 살펴보면 이하의 표와 같다.

<농상공 등 연계 촉진법과 다른 법률과의 비교>

	신연계	중소기업 지역자원 활용 프로그램	농상공 연계 (농상공 등 연계사업계획)
법률	중소기업 신사업 활동 촉진법 (중소기업의 새로운 사업 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지역자원 활용 촉진법(중소기업에 의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 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	농상공 등 연계 촉진법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와의 연계에 의한 사업 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전제 조건	없음	도도부현에 의한 기본 구상인정(지역산업자원 인정) ※지역산업자원·지역 특산물로서 인정되어 있는 농림수산물, 광공업 품 또는 관광자원 등	없음
사업 주체	사업 분야가 다른 2이상의 중소기업자(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그 경영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는 것)	중소기업(단독 또는 공동)	농림어업자와 중소기업자 (각 1이상,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그 경영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는 것)

제 3 장 일본의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

	신연계	중소기업 지역자원 활용 프로그램	농상공 연계 (농상공 등 연계사업계획)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하의 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새로운 사업분야의 개척을 도모하는 것 -신상품 개발 또는 생산 -신서비스 개발 또는 제공 -상품의 새로운 생산 또는 판매방식 도입 -서비스의 새로운 제공방식 도입 및 그 밖의 새로운 사업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산업자원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이하의 사업(상품의 생산지, 서비스 제공지와 지역산업자원의 지정지역에 한정) -상품개발, 생산 또는 수요개척(농림수산물 또는 광공업품) -상품개발, 생산 또는 수요개척 -서비스개발, 제공 또는 수요개척(관광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하의 사업 -신상품 개발, 생산 또는 수요개척 -신서비스 개발, 제공 또는 수요개척
평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적인 cash flow를 확보하고, 10년 이내에 용자반환 및 투자회수가 가능 -일정한 이익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상목표 · 총 매출액의 5%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가가치목표 · 5%이상 향상 -매상목표 · 총 매출액의 5% 이상 증가(다만, 농림어업자는 당해 계획에서의 농림수산물의 매출액)
주요 지원 내용	시장지향형 Hands-on지원사업<상주 전문가가 지역중소기업의 상담에 따라 시장조사, 상품기획, 판로개척, 사업성 평가 등에 관해선 조언 (2008년도는 중소기업구 각 지부에 지역 활성화 지원사무국을 개설)>		
	-보조금 · 연계체 구축을 위한 규약작성, 컨설팅과 관련한 경비보조(상한 500만 엔, 2/3이내)	-보조금 · 지역 조합·공익법인 등에 의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상품, 서비스의 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보조(1/2이내)	-보조금 · 연계체 구축을 위한 규약작성, 컨설팅과 관련한 경비보조(상한 500만 엔, 2/3이내)

	신연계	중소기업 지역자원 활용 프로그램	농상공 연계 (농상공 등 연계사업계획)
인 정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지향형Hands-on지원사업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상품개발, 마케팅 등 정부의 일부보조(상한 3000만 엔, 2/3이내) -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관련 금융기관에 의한 저리용자제도, 중소기업과 도도부현의 협력에 의한 설비자금을 위한 고도화 용자(무이자) -신용보증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보증, 무담보보증 등 특별범위 설정, 신사업 개척보증의 한도 확대 -중소기업 투자육성 주식회사의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에 근거한 신규투자사업 대상 확대 -특허 관계요금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청구료, 특허료를 반액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지향형Hands-on지원사업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상품개발, 시장조사, 신상품 개발 등 경비의 일부보조(상한 3000만 엔, 2/3이내) -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관련 금융기관에 의한 저리용자제도 -신용보증의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보증, 무담보보증 등 특별 범위 설정, 신사업개척보증의 한도 확대,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기구에 의한 채무보증 등 -설비투자감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에 근거한 설비투자에 관한 소득세, 법인세의 특별상각 등 -중소기업 투장육성 주식회사의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에 근거한 신규 투자사업의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지향형Hands-on지원사업 -보조금(농상공 등 연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상품개발 등 경비 일부 보조(상한 3000만 엔, 2/3이내) -보조금(농상공 등 연계지원사업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 전문가 파견 등 경비 일부 보조(상한 500만 엔, 2/3이내) -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관련 금융기관에 의한 저리용자제도 -신용보증의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보증, 무담보보증 등 특별 범위 설정, 신사업개척보증의 한도 확대,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기구에 의한 채무보증 등 -설비투자감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에 근거한 설비투자에 관한 소득세, 법인세의 특별상각 등 -소규모 기업자 등 설비투입 자금조성법의

		신연계	중소기업 지역자원 활용 프로그램	농상공 연계 (농상공 등 연계사업계획)
				특례 · 설비자금대부의 대 부비율을 상한조정 -농업개량자금 등의 특례 · 중소기업자에 게 대부대상 확대, 농 업개량자금 등 상 환기간 및 이치기 간 연장

출전) 近畿經濟産業局 創業・經營支援課 “農商工連携の促進を通じた地域活性化について”, 2008. 8, 9면 이하

제 3 절 농상공 등 연계촉진법의 지원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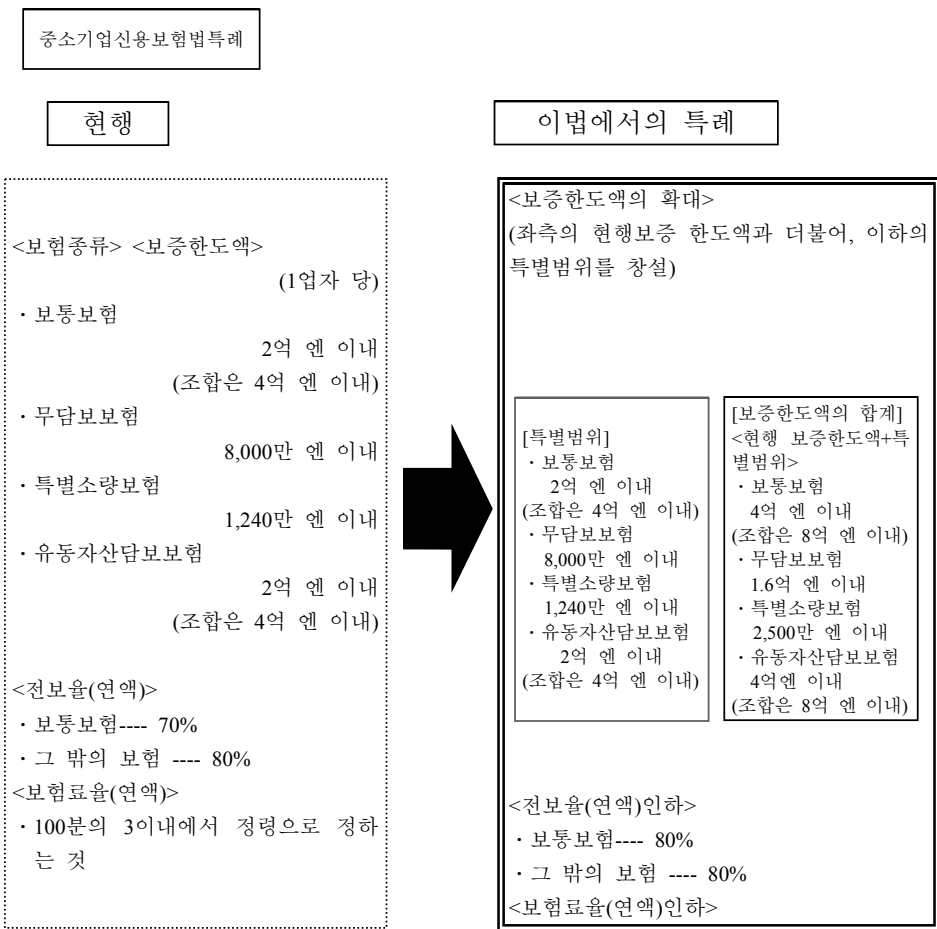
이 법에서의 지원제도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농상공 등 연계사업에 대한 지원과 농상공 등 연계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이다. 전자의 지원제도로서는 ①중소기업신용보험법의 특례, ②소규모 기업자 등 설비투입 자금조성법의 특례, ③식품유통구조개선 촉진기구의 채무보증, ④농업개량 자금조성법에 근거한 대부 대상을 중소기업자에 확대, 상환기간·이치기간 연장, ⑤설비투자 감세(減稅)제도 창설(7%의 세액공제 또는 30%의 특별상각), ⑥중소기업자에 대한 저리융자제도 창설(일본정책금융공고)이 있다. 그리고 후자의 지원제도로서는 사업계획의 인정을 받은 공익법인 또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은 중소기업신용보험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중소기업신용보험법상의 특례가 있다.

이상과 같은 농상공 등 연계촉진법에 근거한 지원조치에 관해서 구

체적인 지원제도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신용보험법²¹⁾의 특례(제8조)

계획인정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해서 보통보험, 무담보보험, 특례 소액보험 및 유동자산담보보험의 다른 범위를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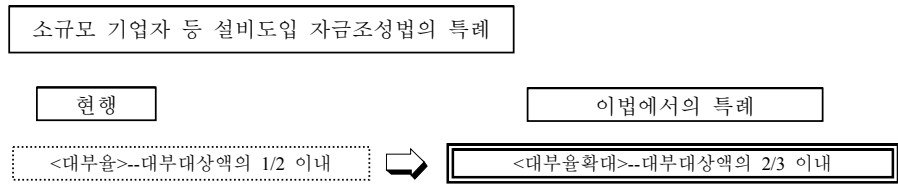


21) 이법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사업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의 채무보증에 관해서 보험 제도를 확립하고, 중소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1950년12월14일 법률 제264호, 최종개정 2008년6월11일 법률 제61호).

출전) 近畿経済産業局 創業・経営支援課 “農商工連携の促進を通じた地域活性化について”, 2008. 8, 6면

2. 소규모 기업자 등 설비도입자금조성법²²⁾의 특례(제9조)

계획인정을 받은 소규모 기업자에 대해서 설비자금대부의 대부할부를 인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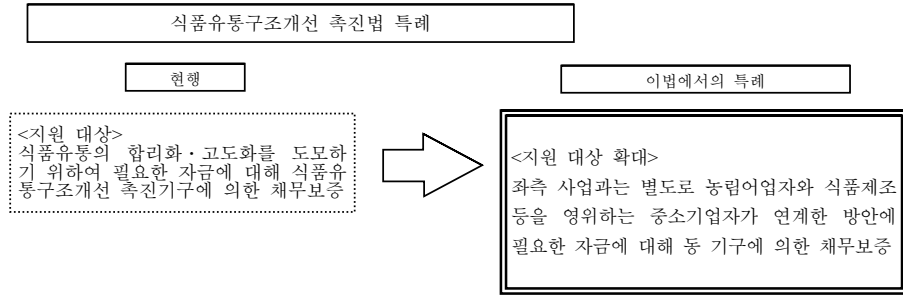
출전) 近畿経済産業局 創業・経営支援課 “農商工連携の促進を通じた地域活性化について”, 2008. 8

3. 식품유통 구조개선 촉진법²³⁾의 특례(제10조)

계획인정을 받은 식품제조 등 사업을 하는 농림어업자 및 중소기업자에게 식품유통 구조개선 촉진기구가 당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채무보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2) 이법은 소규모 기업자의 창업 및 경영기반의 강화에 필요한 설비도입의 촉진을 위하여 자금의 대부를 하는 도도부현에 대해서 국가가 필요한 조성을 하여 소규모 기업자 등의 창업 및 경영기반의 강화촉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1956년5월22일 법률 제115호, 최종개정 2007년5월25일 법률 제58호).

23) 이법은 식품유통부문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 식품과 관련된 하는 유통기구의 합리화와 유통기구의 고도화 도모 및 일반 소비자의 이익증진, 농림어업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991년5월2일 법률 제59호, 최종개정 2007년5월25일 법률 제58호).



출전) 近畿經濟産業局 創業・經營支援課 “農商工連携の促進を通じた地域活性化について”, 2008. 8

4. 농업개량자금조성법²⁴⁾, 임업·목재산업 개선자금 조성법²⁵⁾, 연안어업 개선자금조성법²⁶⁾의 특례 (제11조~제13조)

- 24) 이법은 농업자가 농업경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새로운 농업부문의 경영 또는 농축산물의 가공사업의 경영개시 또는 농축산물, 그 가공품의 생산·판매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자에게 농업개량자금을 부여하는 도도부현에 대해서 정부가 필요한 조성제도를 확립하고, 농업경영의 안정과 농업생산력의 증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956년11월12일 법률 제102호, 최종개정 2002년5월29일 법률 제52호).
- 25) 이 법은 임업종사자 등이 임업경영 또는 목재산업경영의 개선 또는 임업노동과 관련하는 노동재해의 방지 및 임업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확보를 목적으로 새로운 임업부문 또는 목재산업부문의 경영을 개시하고, 임산물의 새로운 생산·판매방식을 도입 또는 임업노동과 관련하는 안전위생시설 또는 임업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복리후생시설을 도입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임업종사자 등에게 임업·목재산업 개선자금을 부여하는 도도부현에 대해서 정부가 필요한 조성제도를 확립하고, 임업경영 및 목재산업경영의 건전한 발전, 임업생산력의 증대 및 임업종사자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956년6월1일 법률 제42호, 최종개정 2003년5월30일 법률 제52호).
- 26) 이법은 연안어업종사자 등이 연안어업의 경영 또는 조업상태 또는 생활개선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자주적으로 근대적인 어업기술 그 밖의 합리적인 어업생산 방식 및 어로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시설 또는 합리적인 생활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촉진하고, 청년어업자, 어업노동에 종사하는 자 그 밖의 어업에 종사할 자가 근대적인 연안어업의 경영방법 또는 기술습득 그 밖의 근대적인 연안어업의 경영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조장하기 위해 연안어업종사자 등에게 경영 등 개선자금, 생활개선자금 및 청년어업자 등 양성확보자금을 부여하는 도도부현에 대해서 정부가 필요한 조성제도를 확립하고, 연안어업 경영의 건전한 발전, 어업생산력의 증대 및 연안어업종사자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979년4월27일 법률 제25호, 최종개정 2002년6월19일 법률 제75호).

계획인정을 받은 중소기업자가 농림어업자가 시행하는 농업개발조치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당해 중소기업자가 농업개발자금 등의 대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계획인정을 받은 중소기업자 또는 농림어업자가 당해 계획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농업개발자금 등의 상환기간 및 거취기간을 연장한다.

농업개발자금조성법
 임업·목재산업개선자금조성법
 연안어업개선자금조성법의 특례

현행

이법에 의한 특례

<대상자>
 · 농업자, 임업자, 목재산업사업자, 연안어업자
 · 이러한 자가 조직한 단체
 <상환기간/이치기간>
 10년 이내/3년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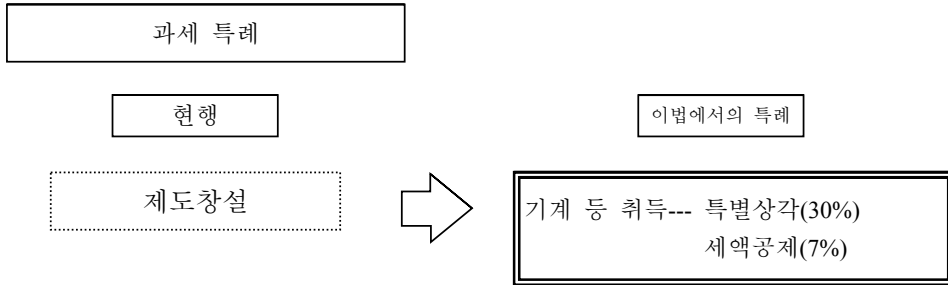


<대상자 확대>
 · 좌측의 대상자 이외에 중소기업자(농업자가 실시하는 농업개발조치 등을 지원하는 조합(농업경영에 필요한 시설정비 등)
 <상환기간/이치기간 연장>
 12년 이내/5년 이내

출전) 近畿經濟産業局 創業・經營支援課 “農商工連携の促進を通じた地域活性化について”, 2008. 8

5. 과세 특례(제14조)

계획인정을 받은 중소기업자 중에서 신상품 또는 신역무의 수요개척의 정도가 일정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정을 받은 자에게 설비투자과 관련된 소득세 및 법인세의 특별상각 등의 특별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출전) 近畿經濟産業局 創業・經營支援課 “農商工連携の促進を通じた地域活性化について”, 2008. 8

제 4 절 농상공 등 연계대책 지원사업

1. 사업화 · 시장화 지원사업

사업화 · 시장화 지원사업에서는 인정 농상공 등 연계사업을 실시하는 중소기업자의 대표자를 보조대상자로 하고 있으며, 보조대상사업으로는 농상공 등 연계 촉진법에 근거하여 인정받은 농상공 등 연계사업과 관련이 있는 신상품 및 신서비스 개발과 이것과 관련이 있는 시상품, 실험, 마케팅 조사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보조대상에 대한 경비를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사례금, 여비, 사업비(회의비, 회의장 사용료, 인쇄제작비, 소모품비, 자료구입비, 통신운반비, 마케팅조사비, 통역료 · 번역료, 산업재산권 등 취득비, 연계구축비, 위탁비 등) 그리고 시상품 · 개발비(원재료비, 비품비, 기계장치 등 제작 · 구입비, 시상품비, 디자인비, 실험비, 설계비, 위탁비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한 보조금액 및 보조비율은 시상품 · 개발비를 신청하는 경우 100만 엔 이상부터 3000만 엔 이하까지, 그리고 시상품 · 개발비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 엔 이상부터 250만 엔 이하까지로 하고 있으며 보조비율은 보조대상경비의 3분의 2 이내로 하고 있다.²⁷⁾

2. 연계체 구축 지원사업

(1) 지원기관형

연계체 지원구축사업 중 지원기관형의 보조대상이 되는 자는 인정 받은 농상공 등 연계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공익법인 또는 NPO법인이다. 이와 같은 대상기관은 농상공 등 연계 촉진법에 근거하여 인정을 받은 농상공 등 연계 지원사업과 관련되는 세미나, 연수, 교류이벤트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례금, 여비, 사업비(회의비, 회장 대여비, 소모품비, 인쇄제본비, 통신운반비, 광고비, 마케팅 조사비 등) 경비를 보조받고 있다. 그리고 보조금액은 100만 엔 이상부터 500만 엔 이하까지이며 보조금액의 보조율은 보조대상경비의 3분의 2 이내로 정하고 있다.²⁸⁾

(2) 연계사업자형

연계체 구축 지원사업 중 연계사업자형의 보조대상은 연계체를 구축함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중소기업자이다. 이러한 중소기업자가 실시하는 사업 중 보조대상이 되는 사업으로서는 농상공 등 연계 사업 계획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전망이 있어야 하며, 또한 연계체를 구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례금, 여비, 사업비(회의비, 회장 대여비, 소모품비, 인쇄제본비, 통신운반비, 광고비, 마케팅 조사비 등) 등의 경비를 보조대상경비의 3분의 2 이내에서 보조율을 정하고 100만 엔 이상 500만 엔 이하의 보조금을 보조하고 있다.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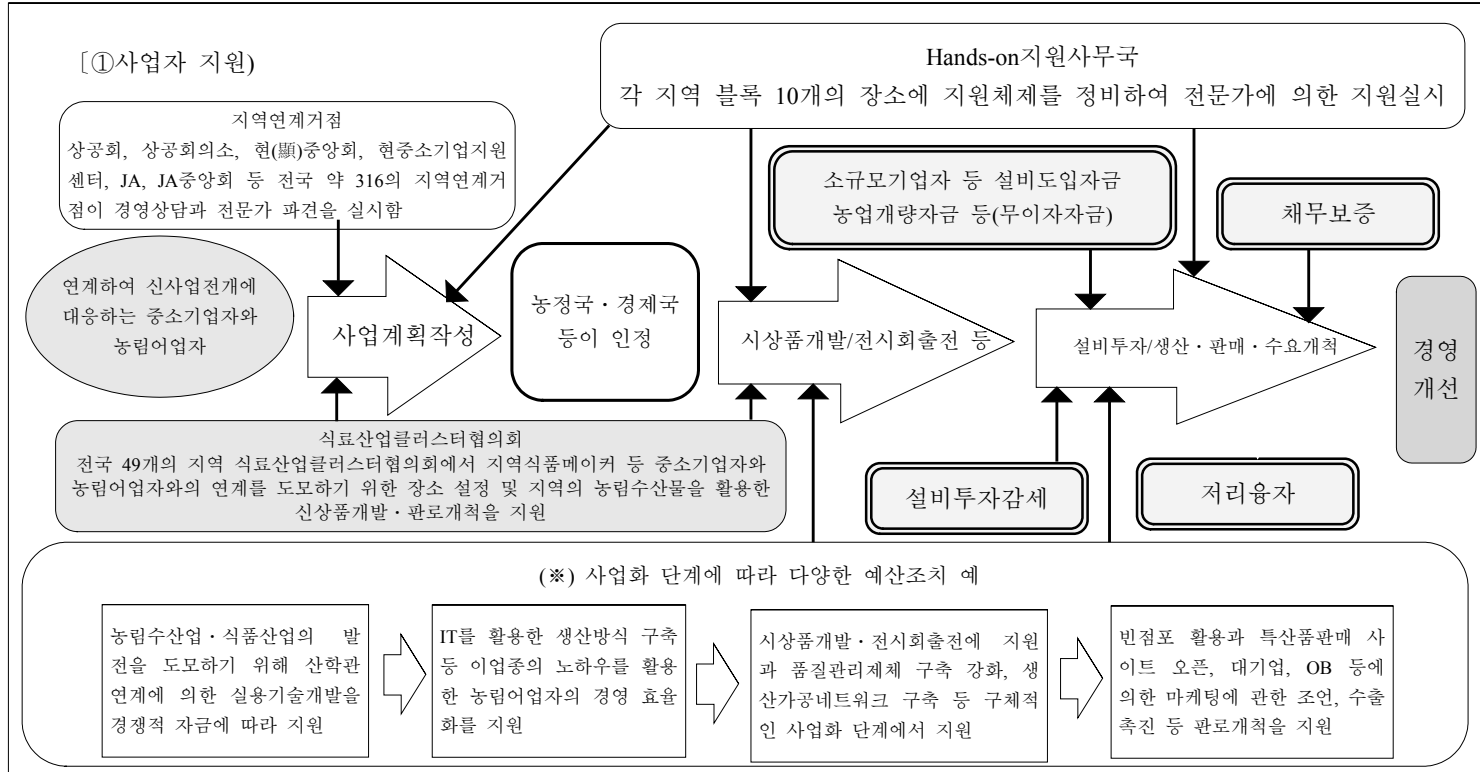
27) 中小企業庁, “農商工連携対策支援事業”, 2008.3, 3면

28) 中小企業庁, “전계”, 4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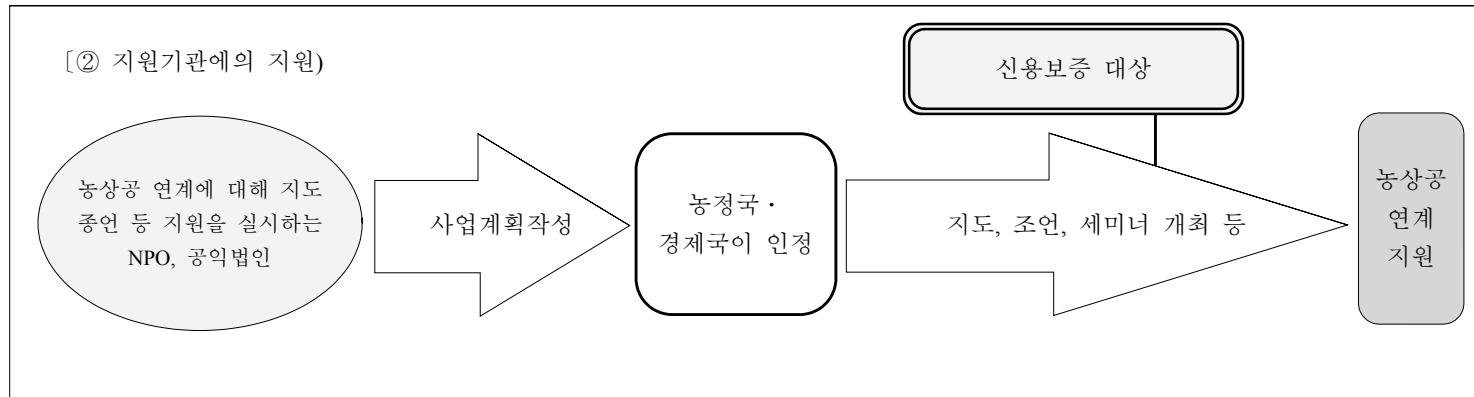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농상공 등 연계대책 지원사업을 분석하면 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과 지원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농상공 등 연계 촉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9) 中小企業庁, “전계”, 5면

농상공 등 연계촉진법에 따른 지원 흐름(1)



농상공 등 연계촉진법에 따른 지원 흐름(2)



부분은 법률인정에 의한 지원

출전) 九州經濟産業局 産業部 “農商工連携の促進について”, 2009. 4

3. 농상공 등 연계지원책

(1) 국산 원재료 공급 강화 대책 사업³⁰⁾

1) 대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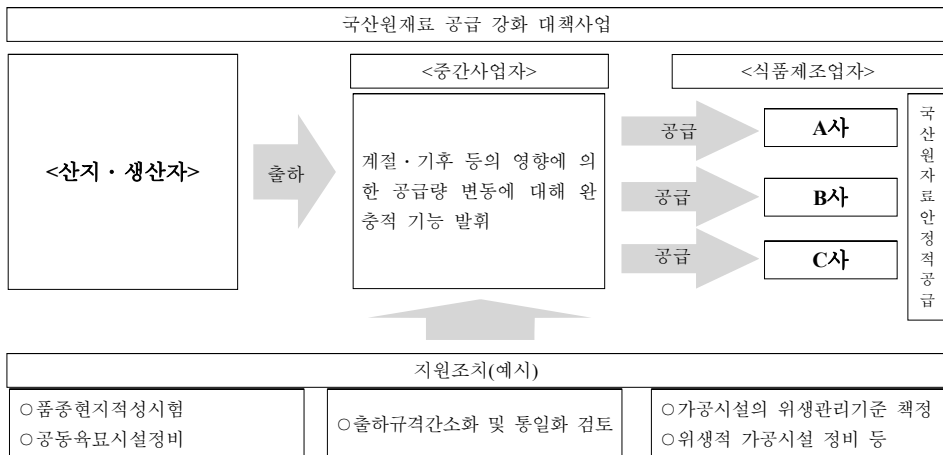
가공식품과 외식산업을 위해 국산 농축산물의 안정공급, 이용확대를 담당하는 생산자, 유통업자, 외식사업자 등

2) 지원내용

① 공급연쇄구축 대응 지원<보조율(정액, 1/2)>

생산자와 식품제조업자를 연결하는 자(중간사업자)를 중축으로 수용에 대응한 국산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과 특색 있는 상품개발·판매촉진활동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방안을 지원한다. 또한 이와 같은 방안에 필요한 기계와 농산물 처리가공시설 등의 정비를 지원한다.

<지원체계>



30) 農林水産省・經濟産業省, “農商工連携施策利用ガイドブック”, 2009. 5면

② 식품제조업자 등 국산 원자재 조달의 원활화<보조율(1/2,1/3)>

식품제조업자 등이 국산 원자재의 안정적 조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가 등에게 생산면·경영면에서 지원하는 방안과 농가 등과 연계하여 수입하여 국산으로 원자료를 전환하는 경우에 새롭게 필요로 하는 처리가공시설 등의 정비를 지원한다.

(2) 강한 농업조성 교부금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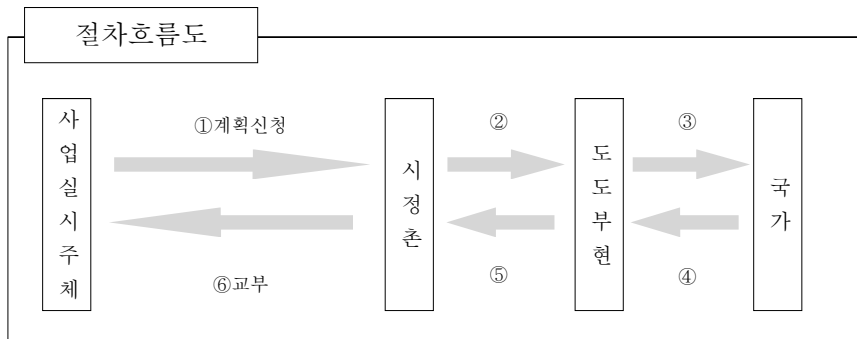
1) 대 상

농업협동조합, 농업생산법인, 농업인이 조직하는 임의단체 등

2) 지원내용<보조율(정액)>

소비자와 실수요자의 요구에 대응한 고품질의 농축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집적 출하 시설과 농축산 처리가공시설 등 공동이용시설, 야채 수확기(機) 등 공동이용기계의 정비를 지원한다.

3) 절 차



31) 農林水産省・經濟産業省, “전계”, 6면

(3) 지산지소(地產地消)모델 타운사업³²⁾

1) 대 상

지산지소모델 타운사업의 대상자는 민간단체 등으로 하고 있다.

2) 지원내용<보조율(1/2 이내)>

농업만이 아니라 급식, 상공, 관광업 등 지역 관계자가 연계하여 당해 지역에서 생산하여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방안 『지산지소 모델타운』을 지원한다. 즉 학교급식과 사원식당에 당해 지역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과 지산지소의 새로운 모델 구축을 지원한다.

3) 지원사업 예

① 추진사업

추진사업에는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협의회 개최 등 사업추진 체제 정비, 선진사례와 소비자·실수요자의 요구 조사, 사업실시 지구 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학교급식메뉴 개발 및 개발한 가공품의 판매시험 그리고 농축산물의 생산기술, 가공기술 보급 및 연수 등이 있다.

② 정비사업

직매시설, 농축산물 처리가공시설,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시설, 지역 식재공급시설, 산지관리시설 등

32) 農林水産省・經濟産業省, “전계”, 7면

(4) 광역연계공생·대류(對流) 등 대책 교부금³³⁾

1) 대 상

광역연계 공생 및 대류 등 대책 교부금은 농업협동조합, 농사조합법인, NPO법인 등 민간단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지원내용<보조율(정액(소프트), 정액 1/2(하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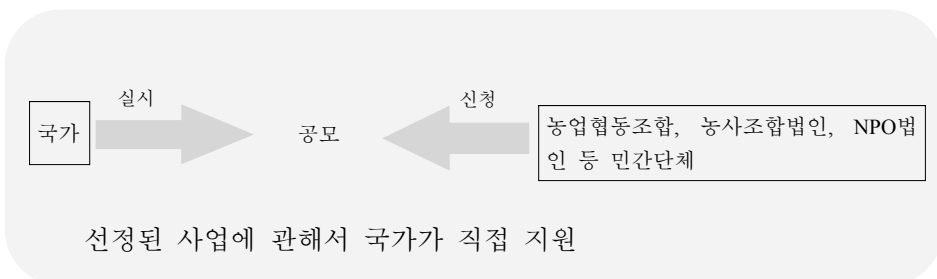
① 하드사업

도시와 농산어촌 간의 교류를 통한 어그리비즈니스(agribusiness:농업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가공, 저장, 유통판매, 농기구·비료제조 등을 포함한 산업으로서의 농업)추진을 위해 필요로 하는 농림수산물 직판장, 농림수산물 가공시설 등 시설 정비

② 소프트사업

직판장 상호가 공동으로 농업체험활동을 받아들이기 위한 체제정비를 위한 회의비, 교통비 등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

3) 지원절차



33) 農林水産省・經濟産業省, “전계”, 8면

(5) 식농연계촉진사업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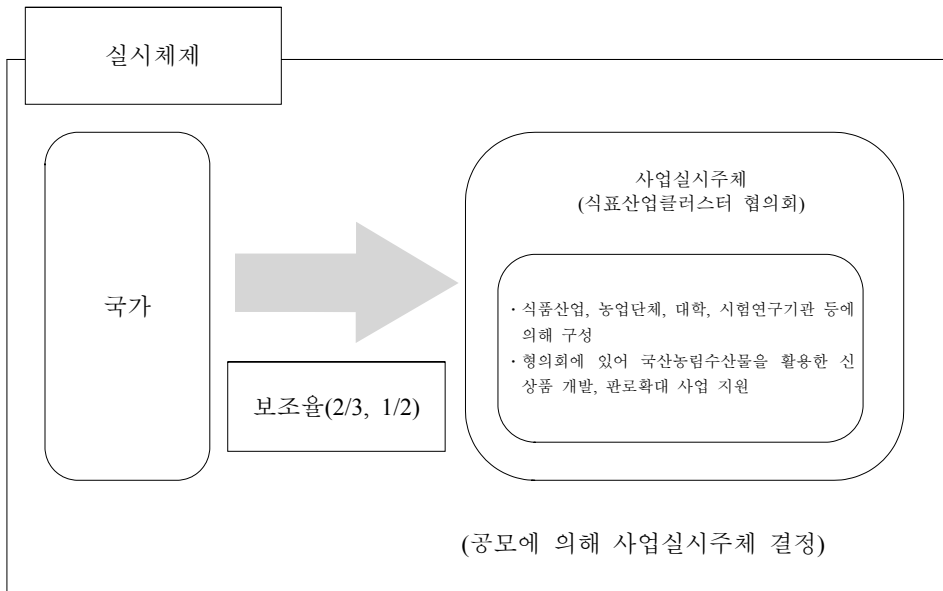
1) 대 상

지역의 식품산업과 농림수산업 등으로 구성하는 협의회(식품산업을 중축으로 농림수산업, 관련 산업, 대학·시험연구기관 등과의 연계에 의해 설립된 단체)

2) 지원내용<보조율(2/3, 1/2)>

지역의 식품산업과 농림수산업 그 밖의 관련 산업 등을 연결하는 코디네터 확보, 관계자 교류촉진, 인재양성, 국산 농림수산물을 활용한 신상품개발·판로확대 등에 지원한다.

3) 실시체제



34) 農林水産省・經濟産業省, “전계”, 9면

(6) 신사업활동 촉진 지원보조금³⁵⁾(농상공 등 연계 대책 지원사업)

1) 대 상

농상공 등 연계 촉진법에 근거하여 인정을 받은 농림어업자와 중소기업자, NPO법인 및 농상공 연계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대기업을 제외).

2) 지원내용

① 사업화·시장화 지원 사업<보조율(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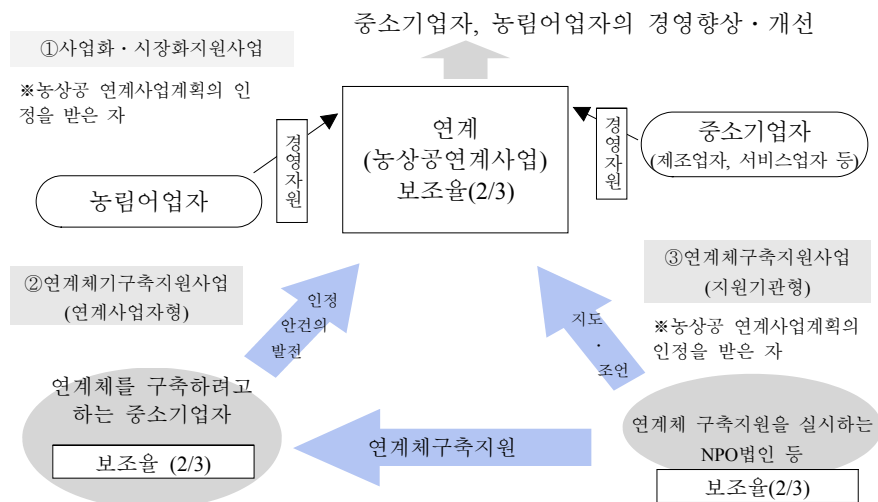
시상품개발, 시장조사, 전시회 출전, 전문가에 의한 지도·조언 등

② 연계체 구축지원 사업(연계사업자형)<보조율(2/3)>

연계체 구축, 시장조사, 전문가파견 등

③ 연계체 구축지원 사업(지원기관형)<보조율(2/3)>

포럼, 세미나 개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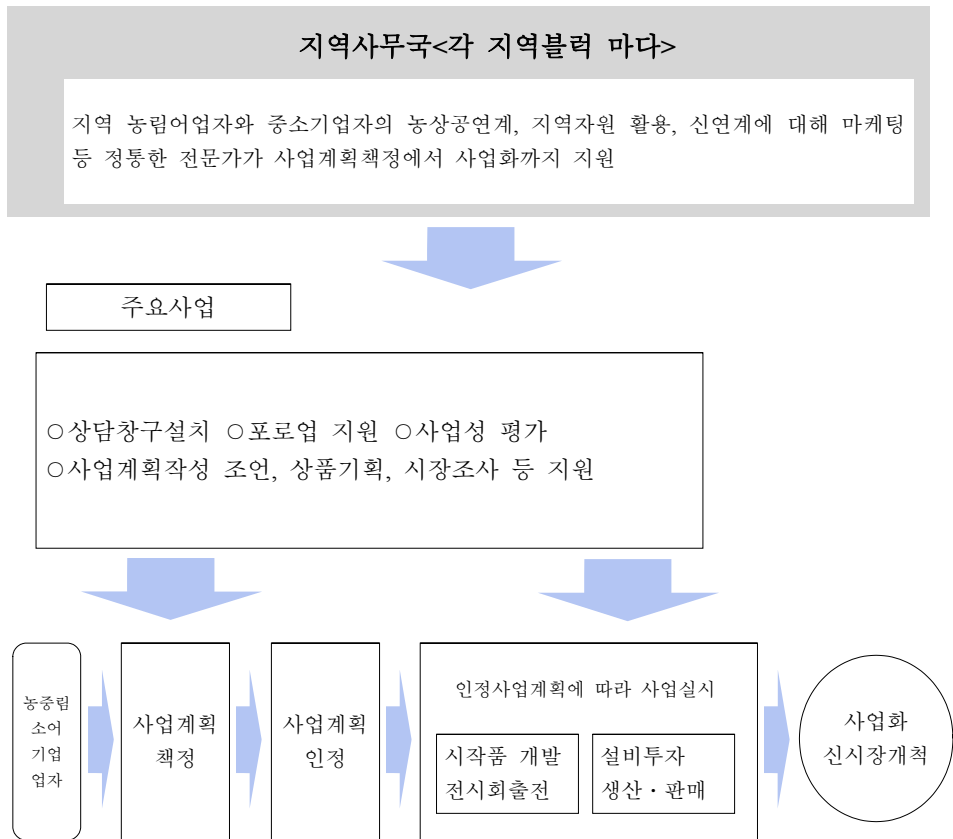
35) 農林水産省・經濟産業省, “전계”, 10면

(7) 시장지향형 Hands-on 지원사업³⁶⁾

1) 대 상

농상공 연계, 지역자원, 새로운 연계를 활용한 신사업에 참여, 법에 의한 인정을 목적으로 하는 농림어업자와 중소기업 등

2) 지원내용



36) 農林水産省・經濟産業省, “전계”, 11면

(8) 소규모사업자 신사업 전국전개 지원사업³⁷⁾

1) 대 상

지역자원을 활용한 신상품 개발과 관광 자원개발 및 그 판로개척 등 참여를 지역의 소규모사업자 등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상공회·상공회의소 등이 있다.

2) 지원내용<보조>

① 특산품개발·관광자원개발 및 그 판로개척

상공회·상공회의소 등이 소규모사업자와 협력하여 실시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산품개발과 관광자원 및 그 판로개척 등 전국 규모의 시장 확대를 위한 신사업전개를 지원한다.

② 상품개발·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전문가 파견

백화점의 바이어 등 전문가를 고문으로 활용하여 상공회·상공회의소에 파견하여 각 지역의 소규모사업자 등이 실시하는 상품개발과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③ 상담·전시회 개최

전국의 백화점과 유통업 담당자를 초대하여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특산품에 대해 상담·전시회를 개최하고 상품 등 정보제공과 소비자 요구 조사 등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37) 農林水産省・經濟産業省, “전개”, 12면

(9) 지역산품 IT판로개척 지원사업³⁸⁾

1) 대 상

IT를 활용한 지역산품의 판로확대에 참여하는 민간기업, 지방자치단체, NPO 및 시스템개발·포털사이트 구축을 실시하는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2) 지원내용<위탁>

① 시스템구축 및 포털사이트 운영

전국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네트 직관시스템 및 포털사이트를 신설하여 운영

② 지역사이트 운영 사업

전술한 시스템을 활용한 지역산품 직관사이트 운영사업

(10) 식품유통 고부가가치모델 추진사업³⁹⁾

1) 대 상

식품유통 고부가가치 모델 추진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식품소매업자, 상점가진흥조합 등을 이 사업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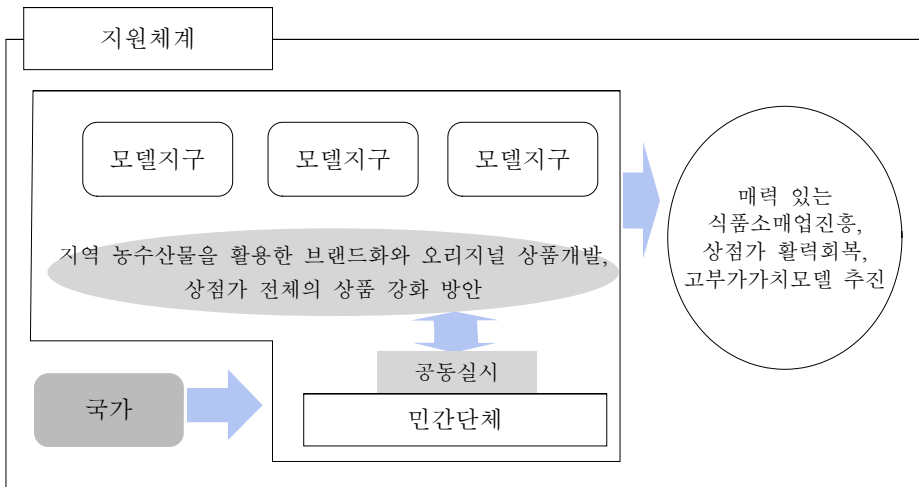
2) 지원내용

식품소매업자와 상점가진흥조합 등이 생산자와 연계하여 식품소매업자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실시할 경우 지원한다<보조율(정액, 1/2)>.

38) 農林水産省・經濟産業省, “전계”, 13면

39) 農林水産省・經濟産業省, “전계”, 14면

- ①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한 메뉴제안과 브랜드화, 오리지널 상품 개발
- ②지역 농수산물의 상품·영양·조리정보 등 제공과 실증판매
- ③산지교류에 의한 지역서비스 향상



(11) 식품소매기능 고도화 촉진 사업⁴⁰⁾

1) 대 상

식품소매기능 고도화 촉진사업과 관련해서는 중소식품소매업자(종업원 50인 이하)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지원내용

중소식품소매업이 가지고 있는 기능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에 관하여 업무용 선진적 절약 에너지·절약 자원형 식품제조·가공설비, 품질관리 고도화 시설 등의 설비·기기로써 시험적 대여방식에 의해 정비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한다<보조율(①or② 1/3, ①&②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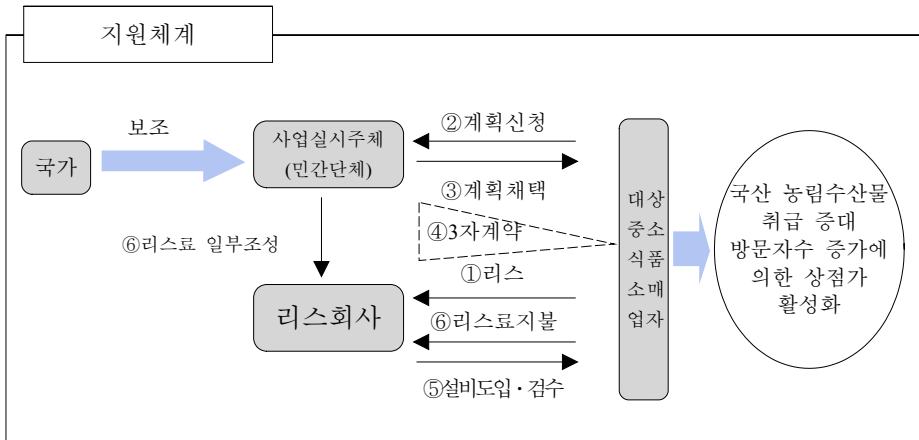
40) 農林水産省・經濟産業省, “전계”, 15면

① 판매상품의 부가가치 향상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식품제조·가공판매, 점내음식제공 업무 등

② 식품판매서비스 기능강화

산지직송판매, 택배서비스 및 출장형 차량판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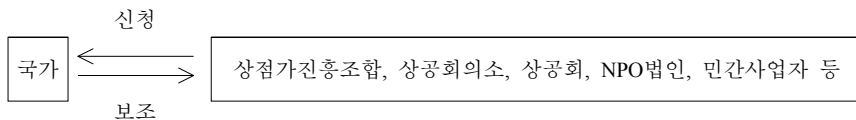


(12) 중소기업 활력향상사업⁴¹⁾

1) 대 상

중소기업 활력향상 사업에서는 상점가진흥조합, 상공회의소, 상공회, NPO법인, 민간사업자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2) 지원내용<보조율(1/2)>



[보조액] 상한 5억 엔

하한 1000만 엔(보조대상 사업비로써 2000만 엔 이상)

41) 農林水産省・經濟産業省, “전계”, 16면

3) 대상사업 예

① 시설정비사업

바이어프리형 컬러포장정비, 절약에너지 아케이드 정비, 교양문화시설정비, 상업 인큐베이터 시설 정비 등

② 지원사업

가) 하드사업

가로등 정비, 부동산 소유자 믹스 점포정비, 방범카메라설치, 전자머니 포인트 카드 도입 등

나) 소프트사업

빈 점포를 활용한 상점가 등 활성화사업(지역 농산품의 안테나숍, 보육서비스시설, 고령자교류시설 등), 이벤트사업, 노후화된 아케이드 철거, AED(자동체외식 제세동기)설치, 상점가 전체 운영관리를 담당할 인재육성사업

(13) 수출촉진사업⁴²⁾

1) 대 상

수출촉진사업의 지원 대상은 수출하려는 농림어업자단체, 식품가공업자단체 등이다.

2) 지원내용

수출촉진사업에 대한 지원으로서는 해외 판매촉진활동 보조, 상담회 개최, 견본시장 참가지원 그리고 외국으로의 판매에 관한 정보제공이 있다.

42) 農林水産省・經濟産業省, “전계”, 17면

3) 주요사업

① 농림수산물 등 수출촉진대책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여 전략적으로 수출에 임하려는 농림어업자의 방안(시장조사, 판매촉진활동, 물류기술실증, 브랜드인증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보조율(1/2)>.

② 활발한 수출정보네트워크 구축사업

국내에서의 전시, 상품회 등 장소와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고, 국내외 바이어와 수출 선구자로부터 활발한 수출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네트워크구축을 지원한다.

③ 농림수산물 등 해외 판로창출·확대사업

해외에서 농림수산물, 식품전시, 상담회(식품총합, 수산전문, 목재 등 전문)에 일본 전시관을 설치하고 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수출확대가 기대되는 국가(도시)의 고급백화점 등에 상설점포를 설치하여 시사판매와 PR활동을 지원한다.

(14) 일본무역진흥기구 사업⁴³⁾(JETRO보조금)

1) 대 상

일본무역진흥기구를 통한 사업의 대상은 중소기업자 등이다.

2) 지원내용<보조율(정액, 1/2,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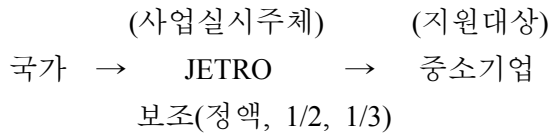
지역산품의 수출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비즈니스매칭 지원, 주요 도시시장 조사 등 다음에 열거하는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43) 農林水産省・經濟産業省, “전계”, 18면

3) 대상사업

- ①지역산품관련 무역상담
- ②해외에서의 지역산품 코디네이션 기능
- ③지역산품의 시험수출 등에 의한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과제 도출
- ④지역산품에 대한 내외 견본시장과 해외 전개까지 일관된 매칭 지원
- ⑤지역산품수출실패사례 조사
- ⑥지역기업의 관심이 높은 시장 시찰 및 상담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한 현지답사
- ⑦지역산품과 관련한 해외 견본시장 출전 지원

<실시체제>



(15) 새로운 농림수산정책을 추진하는 실용기술 개발사업⁴⁴⁾

1) 대 상

①~④의 섹터 중 2이상 섹터의 연구기관으로 구성되는 공동연구 그룹으로 한다. 즉 ①도도부현, 시정촌, 공립시험연구기관 및 지방 독립 행정법인, ②대학 및 대학공동이용기관, ③독립 행정법인, 특수법인 및 인가법인 그리고 ④민간기업, 공익법인, NPO법인, 협동조합 및 농림어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2) 지원내용<위탁>

산학관에 의한 공동연구그룹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모를 하고, 외부평가위원회에 의해 심사를 거쳐 채택된 과제에 대하여 위탁

44) 農林水産省・經濟産業省, “전계”, 19면

연구를 실시한다.

① 연구영역설정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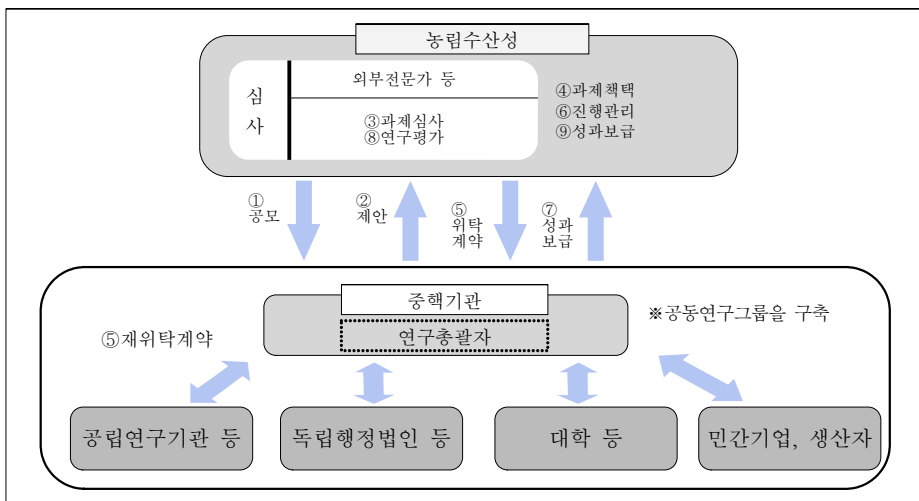
농림수산성이 행정부국·지역으로부터 받은 요청을 근거로 농림수 산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성이 높다고 미리 연구주제(연구영역)을 설정 하여 모집하는 것으로서 연구기관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 1과제 연 구비 5천만 엔 이내/년으로 한다.

② 현장제안형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관점에서 연구영역을 설정하지 않고 지역의 자유로운 발상을 활용하여 지역과 현장의 기술적 과제 해결에 연계되는 연구 과제를 제안 받는 것으로서 연구기간은 원칙적으로 3 년 이내, 1과제 연구비 3천만 엔 이/년으로 한다.

③ 긴급대응형

농림수산 분야에 재해가 발생하거나 그 밖의 돌발적인 사태 등 긴 급과제에 대응하고 그 경우마다 모집하는 것으로서 연구기간은 연도 내이며 1과제 연구비 1천만 엔 이내로 한다.



(16) 신수요 창조대책 사업⁴⁵⁾

1) 대 상

신수요 창조대책 사업은 지원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즉 신수요 창조 프런티어육성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단체를, 그리고 성분보증·분별관리 시스템 확립에 관해서는 신수요 창조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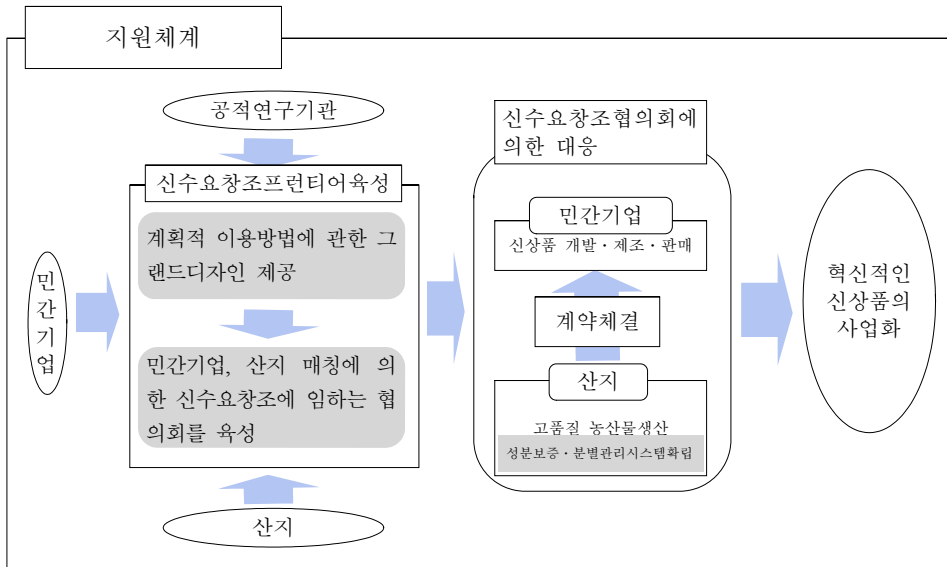
① 신수요 창조 프런티어 육성<보조율(정액)>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신식품과 비식품 분야의 신소재에 관해서 그 획기적인 이용방법에 관한 그랜드디자인을 제공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공적연구기관, 민간기업, 산지의 베스트매칭에 의한 신수요 창조 협의회를 설립한다.

② 성분보증·분별관리 시스템 확립<보조율(1/2 이내)>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신식품과 비식품 분야의 신소재에 관해서 원재료의 기능성분의 함량을 보증하거나 다른 식품·소재와 분별해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등 고품질의 신식품·신소재를 안정 공급하는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실증과 매뉴얼 작성, 원재료 수확과 조정·가공에 필요한 기계 및 시설 정비를 보조한다.

45) 農林水産省・經濟産業省, “전계”, 20면



(17) 지역혁신창출 연구개발 사업⁴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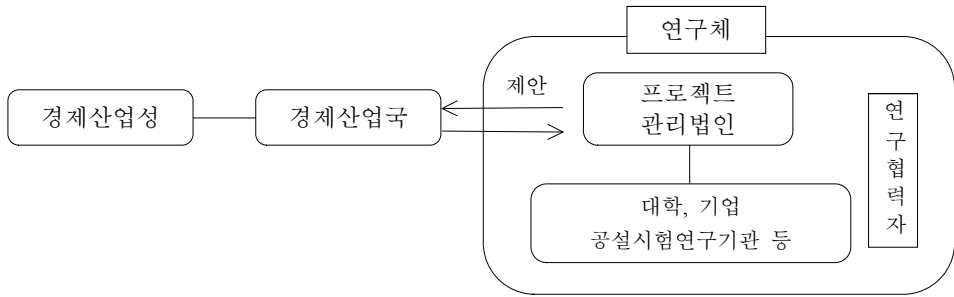
1) 대 상

지역의 산학과(기업, 대학, 공설시험연구기관 등이 중심이 되는 연구기관) 지역의 산학관에 의해 신산업 창출에 공헌할 수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개발테마를 지원한다.

2) 지원내용<위탁>

각 경제산업국이 사업주체가 되어 공모에 의해 연구개발테마를 모집하고 위탁연구로써 실시한다. 기간은 2년 이내로서 위탁 금액은 일반형 1년은 3천만 엔 이상 1억엔 이하, 2년은 5천만 엔 이내이며, 지역자원활용형으로서 1년은 5백만 엔 이상 3천만엔 이내, 2년은 2천만 엔 이내로 한다.

46) 農林水産省・經濟産業省, “전계”, 21면



(18) 지역 신사업창출·발전기반 촉진 사업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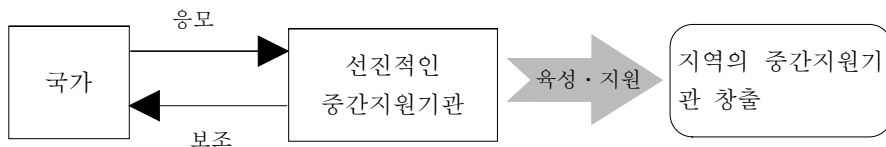
1) 대 상

사회기업가적인 인재육성·배출과 활동지원을 실시하는 중간지원기관의 기능강화 및 자립한 성공모델의 노하우를 다른 지역에 이전하기 위한 지역비즈니스 사업자에 대해서 지원한다.

2) 지원내용<보조율(정액)>

① 중간지원기능강화 사업

지역비즈니스 기업과 경영에 관해서 질 높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중간지원기능을 지역에 창출하기 위하여 중간지원기능을 담당할 인재를 전국적 규모로 발굴하여 육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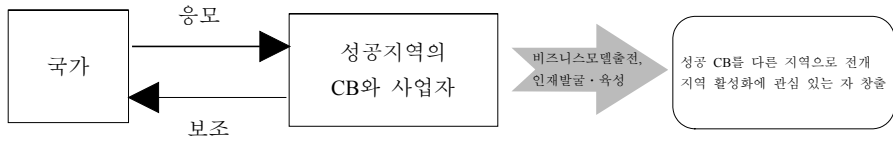


② 성공모델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 지역 활성화 인재창출·육성사업

유사한 과제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의 연수를 통하여 성공모델의 노하우를 이전받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인재를 창출·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47) 農林水産省・經濟産業省, “전계”, 27면

제 3 장 일본의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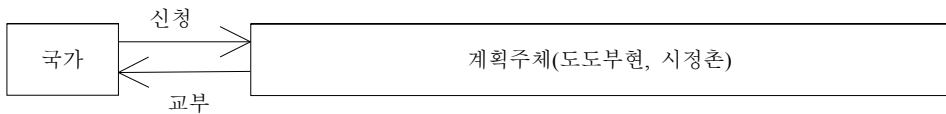


(19) 농산어촌 활성화 프로젝트지원 교부금⁴⁸⁾

1) 대 상

농산어촌 활성화 프로젝트 지원 교부금은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도부현, 시정촌, 토지개량구역,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삼림조합, NPO법인, 농림어업자 등이 조직하는 단체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2) 지원내용<보조율(정액, 1/2, 5.5/10, 4.5/10, 4/10, 1/3 등)>



3) 대상사업 예

농산어촌에 있는 생산기반과 생산기계시설, 교류·체험시설 등의 정비를 대상사업으로 하고 있다.

(20) 선구적 비즈니스 연계 지원사업⁴⁹⁾

1) 대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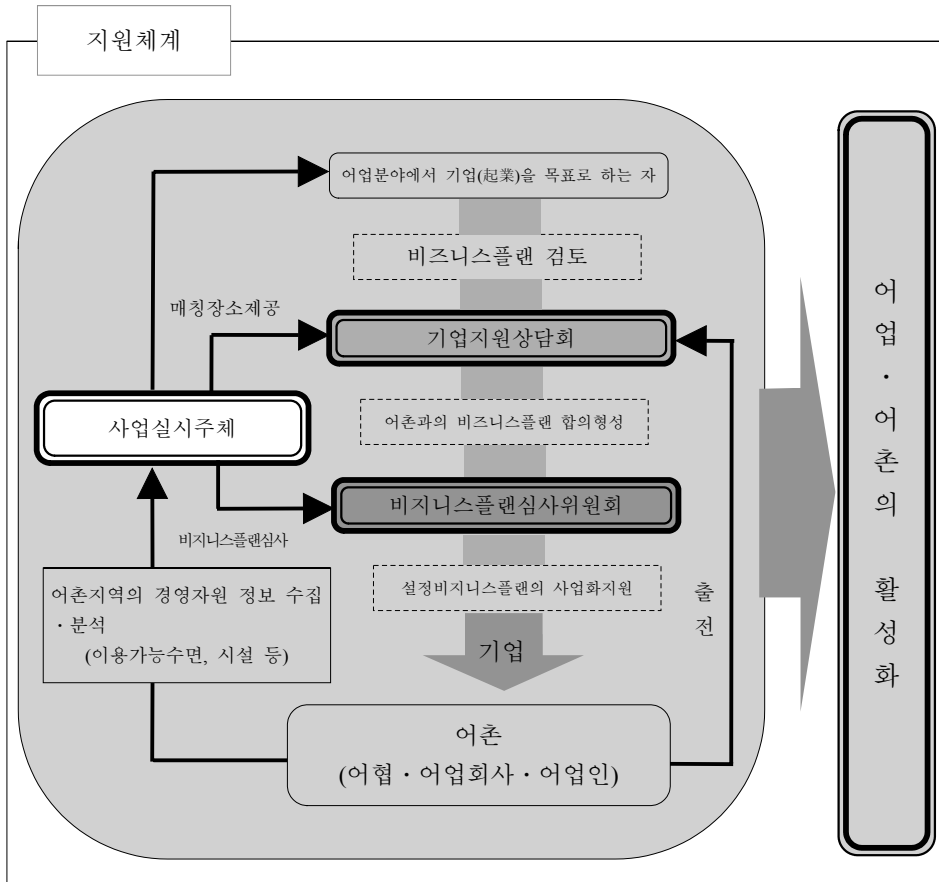
과거 3년 이상 어업을 영위하지 않은 기업 및 사업자 등을 선구적 비즈니스 연계 지원사업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48) 農林水産省・經濟産業省, “전계”, 29면

49) 農林水産省・經濟産業省, “전계”, 31면

2) 지원내용<보조율(사업비의 1/2 이내)>

다른 업종의 노하우와 저비용기술 등을 활용하여 어업의 생산부터 가공·유통·판매까지 새로운 비즈니스플랜의 사업화를 최장 3년 지원한다.



(21) 농촌지역 취업기회 창출 지원사업⁵⁰⁾

1) 대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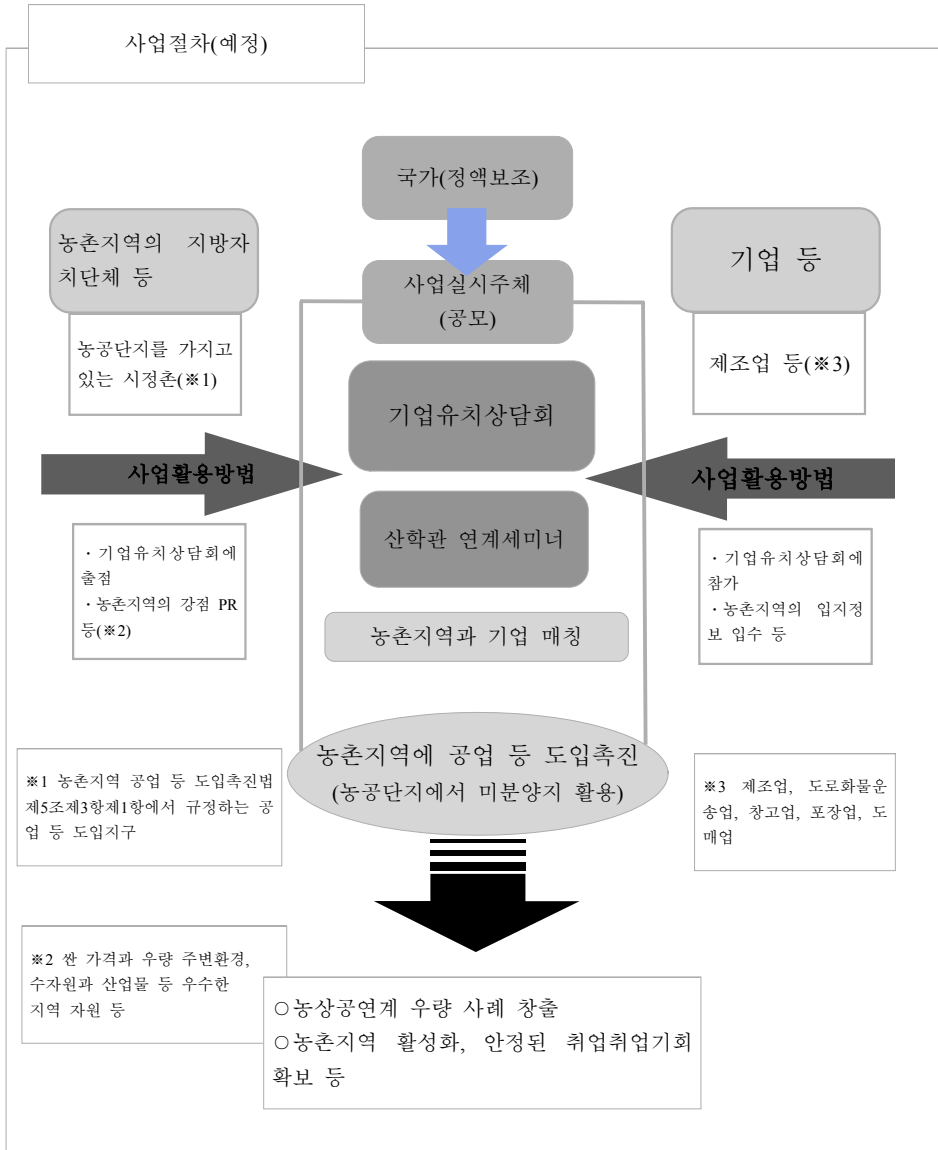
농촌지역 취업기회 창출에 관한 지원사업은 당해 지역에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단체, 특히 기업유치 상담회를 실시하

50) 農林水産省・經濟産業省, “전계”, 32면

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지원내용

기업유치 상담회, 산학관 연계세미나 개최에 대해 지원한다<보조율 (정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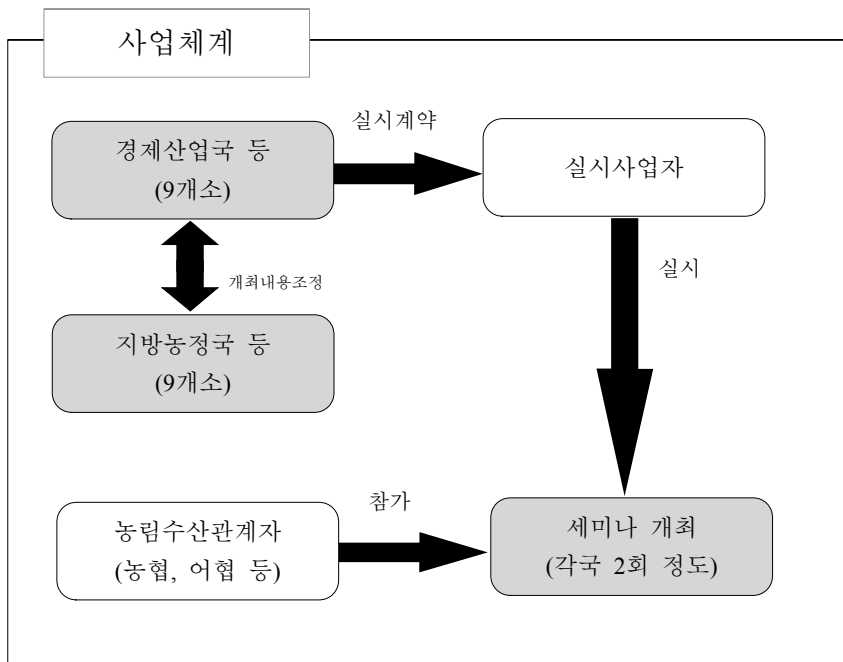
(22) 농림수산 관련 지적재산의 기반구축⁵¹⁾

1) 대 상

농림수산 관련 지적재산의 기반구축과 관련해서는 당해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림수산관계자 및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2) 지원내용

각 경제산업국 등에서 지방농정국과 연계하여 각 2회 농림수산관계자에 대해 특허, 상표(지역브랜드) 등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세미나를 개최한다.



51) 農林水産省・經濟産業省, “전계”, 3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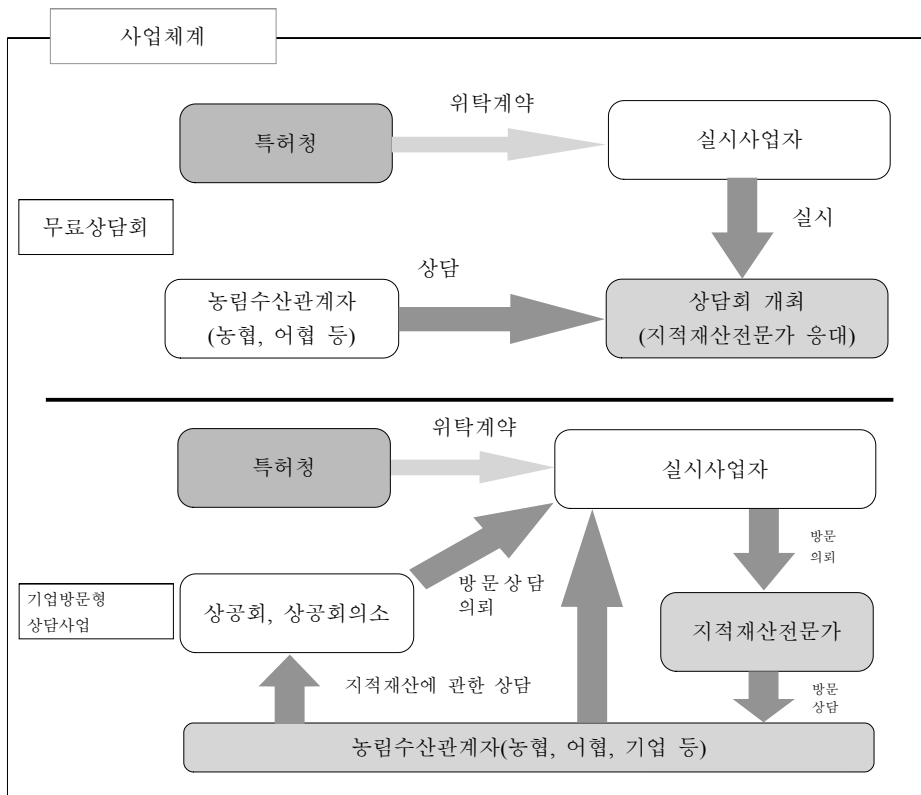
(23) 농림수산 관련 지적재산 활용강화⁵²⁾

1) 대 상

농림수산 관련 지적재산의 활용강화를 위한 대상자는 농림수산관계자, 중소기업 등이다.

2) 지원내용

변리사 등 지적재산전문가에 의한 산업재산권(특허, 상표 등)에 관하여 무상으로 상담회를 개최하고, 또한 기업 등의 요청을 받아 지적재산전문가가 직접 방문하는 기업방문형의 상담 사업을 전국에서 실시한다.



52) 農林水産省・經濟産業省, “전계”, 34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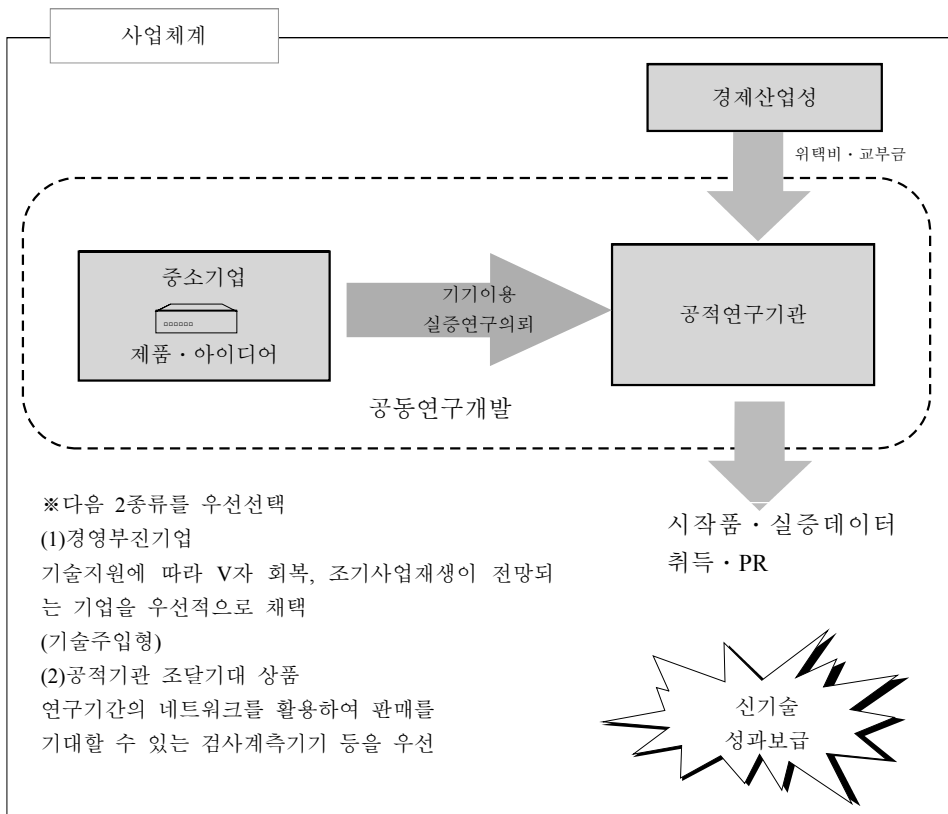
(24) 중소기업 제품 성능평가사업⁵³⁾

1) 대 상

중소기업 제품의 성능평가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특성상 중소기업자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지원내용

공적 연구기관이 고도의 기술, 설비, 인재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제품을 연구개발·실증하여 인정하는 것을 지원한다.



53) 農林水産省・經濟産業省, “전계”, 35면

(25) 지역연계거점⁵⁴⁾

1) 대 상

지역연계거점을 형성하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한 다는 측면에서 중소기업자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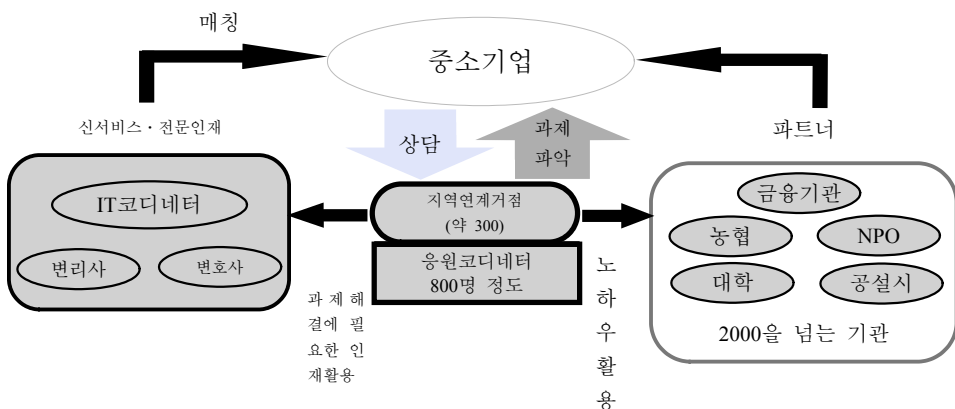
2) 지원내용

① 지원 대상사업

새로운 경영방법의 도입, 예를 들면 IT를 활용한 경영관리, 지적재산파악·활용지원 등을 지원한다. 또한 경영혁신, 지역자원 활용, 농상공연계 등 신사업의 전개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며 창업·사업재생 및 사업승계 등을 지원한다.

② 지원메뉴

창구상담, 순회상담, 전문가과견(기업 출신자, IT전문가, 변호사, 중소기업 진단사 등) 및 세미나·강습회 등 정보제공



54) 農林水産省・經濟産業省, “전계”, 36면

제 5 절 농상공 등 연계 활성화 방안

1. 농림수산업과 상공업과의 연계에 의한 마케팅 강화

(1) 생산자와 유통업자 등과의 연계 추진

생산자, 제조업자등과 소매업과의 제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상담회와 같은 다이렉트인 커뮤니케이션의 대진을 진행시키는 것과 동시에, 안테나숍의 활용이나, 지역 내에서 농상공 연계와 판로 개척을 진행시키는 코디네이터의 육성을 통해서 생산자와 소매업과의 정보 공유를 촉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본래 소매업자와 서로 연락을 하고 있는 현지의 도매업자나 가공업자등이 소매업과 생산자등을 중개하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생산물의 매력을 소매업에 어필하는 것이 용이하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향후에는 안테나숍의 조정 기능·정보 집약 강화, 지역의 농림업자등과 소매업과의 조정을 중개하는 지역의 코디네이터의 육성을 진행시켜 생산자등과 소매업과의 조정의 원활화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역의 농가가 상호 연계하여 농업생산법인 제도를 활용한 대규모화를 진행시키기 위한 농지의 집약화 추진 및 공용 시설의 정비 지원 등 환경정비를 위한 지원의 추진이 중요하다.

그리고 식품 리사이클에 있어서는 식품 제조업, 유통업, 외식산업 등의 사업자로부터 배출되는 식품잔반 비료화를 통하여 이것들을 이용해 생산된 농축산물이나 가공 식품 등을 식품잔반 배출 사업자가 수집, 부가가치가 높은 식재로서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환언하면 농상공이 일체가 된 『리사이클 루프』의 구축을 각 지역에 있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⁵⁵⁾

55) 農商工連携研究会 “전계”, 23면 이하

(2) 생산자, 제조업자에 의한 소비자·수요처의 요구 조사 촉진

생산자와 제조업자가 팔리는 농림수산물·식품 만들기를 추진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와 소매업자, 가공업자가 어떠한 농림수산물·식품을 기호 하며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미리 파악한 다음 생산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매칭 페어를 통한 요구 조사를 추진하거나, 안테나숍 등의 활용을 통한 생산자에 의한 소비자, 수요처와의 공동에 의한 신상품 개발·테스트 판매를 촉진하는 것과 동시에, 생산자가 요구 조사의 중요성이나 마케팅에 관한 노하우를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산자, 제조업자와 유통업자와의 직접거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문 소비자·수요처의 요구를 파악함과 더불어, 농림수산물·식품이 가지는 매력을 생산자등 자신이 정보를 발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산자의 정보 발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등 IT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정보 발신을 진행시키는 도시지역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농림어업자나 가공업자라 하더라도 인터넷 등 IT를 활용함으로써 소매업자나 도매업자, 소비자에게 산지측이 가지는 생산물에 관한 정보를 직접 발신하는 것과 생산 이력 등의 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여 생산물의 매력을 강하게 어필 할 수 있다.⁵⁶⁾

(3) 산지와 유통관계자의 연계 강화를 통한 수출촉진

일본 식품 시장은 인구 감소에 의해 규모의 축소가 예상되므로 농림어업자의 소득의 향상에 있어서는 본격적인 해외시장에 생산물의 수출을 추진하고 생산량을 증대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농림수산품의 수출 촉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해외시장에 안정적으로 생산물을 공급 가능한 생산량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

56) 農商工連携研究会 “전계”, 27면 이하

해서는 산지 단위 혹은 산지끼리의 연계와 광역적 차원에서 농림업자의 연계 아래 수출을 촉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수출 루트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출에 대응 가능한 설비나 지식, 노하우를 가진 도매업자, 소매업자와의 연계를 추진하는 것도 효과적이다.⁵⁷⁾

2. 상품가치 향상을 위한 방안

(1) 농림수산업과 상공업이 연계된 연구개발 촉진

상공업과 농림수산업의 연계에 의한 효과로서 농림어업자가 가지는 연구 개발 요구 중에서 지금까지 대응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 상공업자가 가지고 있는 연구개발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체제 형성이 필요하다. 신기술방법을 활용한 새로운 상품·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계 설비나 시스템에 대한 연구 개발 요구를 가지는 농업인과 연구 개발 기술이 있는 상공업자와의 매칭을 촉진하는 것이나, 상공 관계와 농림수산 관계의 공적 연구기관 등의 연구에 의해 서로의 요구와 기술을 매칭 하여 문제 해결형의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신상품·서비스 개발과 관련한 연구 개발에서는 생산자와 상공업자와의 빠른 문제해결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요구에 대해 적시에 대응하는 창구 체제를 정비⁵⁸⁾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지역 브랜드육성 촉진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도시지역의 소매점에는 많은 특산품이 출품되고 있지만, 도시지역의 소매점포로 판매되고 있는 상품에 있어 소

57) 農商工連携研究会 “전계”, 28면 이하

58) 農商工連携研究会 “전계”, 30면 이하

비자가 강한 브랜드 가치를 가지는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과의 매상 차이가 확대하는 경향에 있다. 또한 소비자의 질리기 쉬움에 대응하여 풍부하고 다양한 상품을 준비해 두어 매상을 높이려고 하는 경향에 있다.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에서 특산품이 히트 하는 조건으로서 『맛』이나 품질의 보증뿐만 아니라, 강한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수 있다. 특히 소비자의 구매에 있어서는 브랜드 이미지가 주는 영향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향후에는 지역에 있어서의 브랜드력의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어느 지역의 브랜드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과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지적 재산의 보호를 추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⁵⁹⁾

(3) 소비자에게 팔리는 상품생산 촉진

농림 수산물·식품의 『맛』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설명할 수 있게 된다면 산지의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고, 소비자·수요처와도 우위 교섭이 가능하게 되는 메리트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수요처 간의 상품이 가지는 가치의 원활한 전달을 위하여 소비자 요구에 대응한 고품질인 농림수산물·식품의 생산이나 브랜드 확립과 연결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4) 농림어업인, 상공업자의 품질관리 기술 향상

농림어업자, 가공업과 소매업 등의 거래처 사업자에 대해서 농림수산물·식품의 안전성을 어필하는 데에는 농약이나 화학 비료의 적정 사용이나 생산 공정의 관리를 충실히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교

59) 農商工連携研究会 “전계”, 31면

섭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농림어업자와 상공업자가 연계하여 사업에 임함에 있어 농림수산물·식품의 제조, 보존, 수송의 각각의 단계에서 공조 관리나 냉동·냉장 설비 등의 적절한 설비를 도입하여 고도의 품질관리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면 농림수산물·식품의 판매 가격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농림어업자에 의한 상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림어업자에게 GAP의 도입 지원을 실시하고, 농림수산물·식품의 부가가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초기 투자에 대한 지원 및 적당한 설비의 기능이나 규모에 대해 어드바이스 등의 지원을 추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⁶⁰⁾

3. 농상공 등 연계를 활성화를 위한 경영 강화 방안

(1) 전략적 연계도모를 위한 인재 양성

농림어업자의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상공업과의 연계가 주요하며 연계를 추진함에 있어서 농림어업자 자신이 각각 경영자로서의 능력을 충분히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농림어업자가 자신의 경영 재무 관리를 적확하게 실시하고 자본의 증강, 지식 획득 및 시장 조사의 실시 등 필요한 경영 판단을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적 감각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상공업자에게도 스스로 생산 지식이나 노하우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한 농상공 연계를 실현해 가기 위해서는 농림수산물의 생산 실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상공 연계에 임하는 농림어업자, 상공업자가 자금 조달이나 재무관리, IT 활용 추진, 효과적인 설비 투자에 관한 지식 등 경영 노하우와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하우를 이미 가

60) 農商工連携研究会 “전계”, 34면 이하

지고 있는 상공업자와 기업의 OB를 초빙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⁶¹⁾

(2) 농상공 연계에 대한 지원강화

실제로 지역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사업자가 많은 식품 제조업이 자기 부담으로 가공용 시설을 준비하는 거나 시장조사, 제도적 과제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연계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소재를 지역 내에서 가공하고 부가가치를 부여하여 지역의 소득 향상이나 고용 창출에 이바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식품 가공 등을 위한 공용설비의 도입에 대해서 지원하고 생산·제조 현장에 있어서의 전문적인 기술, 관련법령이나 보조금 등의 제도를 전체적으로 이해하여 사업 실시에 관한 어드바이스를 통해 지역 내에서의 연계를 원활화하는 고도의 레벨의 코디네이터의 육성 등 소프트 면과 하드면의 양쪽 모두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⁶²⁾

(3) 농림수산행정과 상공행정의 연계에 의한 연구개발체제 정비 추진

농림어업자와 상공업자의 연계에 의한 연구 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행정에 의한 지원을 유연하게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농림수산행정과 상공행정은 별개의 정책 체계를 이루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공적기관에 대해서도 별개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체계 하에서는 상호 의사소통이 불충분하고, 상호 지원 내용이나 향후의 방침이 공유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는 연계하는 사업자가 효율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61) 農商工連携研究会 “전계”, 35면

62) 農商工連携研究会 “전계”, 39면

부처,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공적 기관에 대해서 농림수산업의 담당 부서와 상공업의 담당 부서 간의 정보교환을 한층 충실히 할 필요요가 요구된다.⁶³⁾

(4) 농상공 연계 블록 협의회를 통한 농상공 연계 보급 활동 추진

지역이 일체가 된 연계 촉진을 위해서는 행정의 사업자로부터의 상담을 원스톱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농림수산행정과 상공행정의 관계자가 참가하는 협의회로서 각 지역에 설립하고 있는 농상공 연계 블록 협의회 등을 유효하게 활용하여 사업자로부터의 상담에 대해 폭넓은 회답을 제안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 등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⁶⁴⁾

4. 구체적인 정책

(1) 공급·판매체제 강화

1) 안정적인 생산체제 구축

대기업에 의한 대응도 포함해 농상공 연계의 본격적인 사업화의 추진을 위해서 중간 사업자를 중축으로 하는 생산자, 식품 제조업자 등의 안정적인 거래관계의 구축, 신가공업무용의 작물을 도입하기 위한 생산 시설의 도입과 지역의 농업인 및 식품 제조업자 등에 의한 생산·가공 시설 등의 도입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 모두 농상공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 입지 촉진법을 활용한 지역의 공용 가공시설의 도입 지원을 추진한다.

63) 農商工連携研究会 “전계”, 39면

64) 農商工連携研究会 “전계”, 40면

가공·업무용 작물의 저비용·주년 안정 생산기술의 개발·도입을 추진한다.⁶⁵⁾

2) 생산자와 소매업의 연계추진

생산자와 소비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있는 도매업자·중도매업자·소매업자, 음식업자와의 다양한 연계를 강화하고 기존의 유통 구조에 머무르지 않는 소비자 요구에 맞은 생산, 생산자의 마케팅 능력 향상, 산지의 입장에서 도매업(산지상사)의 진흥을 추진한다.

지역 농산물의 코디네이터를 활용한 지역 유통 모델의 구축, 이동 판매 등 생산자와 소매업 등과의 다양한 제휴를 실현하기 위한 구조를 확대·전개한다.

식품 관련 사업자로부터 배출되는 식품잔반의 재생이용 및 이것을 이용하여 생산한 농축산물이나 가공 식품 등을 식품잔반 배출 사업자가 구매하는 『리사이클 루프』의 구축을 추진한다.⁶⁶⁾

3) 직매장, 학교급식·사원식당 등에 의한 지역생산과 지역소비 추진

직매장 미정비 지역에 있어서의 정비의 추진과 기존 직매장의 네트워크 등을 추진한다.

학교급식, 사원식당 등에 있어서 그 지방 농산물의 이용 확대를 위한 가공 처리 시설의 정비 등을 추진한다.⁶⁷⁾

4) 판로개척지원

농상공 연계의 성과에 대해서 전국 규모로 판로 개척·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상담회 등 각종 PR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농림수산업, 식품 제조 등 식료 관련 산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폭넓은 인재를 등록하는 코디네이터 뱅

65) 農商工連携研究会 “전계”, 41면

66) 農商工連携研究会 “전계”, 41면

67) 農商工連携研究会 “전계”, 41면

크를 창설함과 더불어, 해당 은행의 활용 등에 의해 마케팅의 전문가가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IT를 활용하여 새로운 상품의 발굴, 정보 발신의 담당자가 되는 사업자의 육성, 판로개척 지원 등을 실시하는 『일본 e물산시』와 전자 태그·전자 상거래 등을 활용하여 안전 정보의 제공, 사업자 등과의 연계를 실현하기 위한 구조 전개 등에 의한 판로개척·확대를 목표로 한다.⁶⁸⁾

5) 농상공 연계를 통한 수출촉진

산지에 있어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에 도전하는 인재를 육성한다. 수출의 안정·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산지, JA, 유통 관계 사업자 등과의 연계대응을 지원한다.

JETRO가 실시하고 있는 상품 전시회 출전 지원 및 해외에서의 매칭 지원 등을 활용하여 해외에서의 판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⁶⁹⁾

(2) 매력 있는 상품생산 방안

1) 기술개발⁷⁰⁾

① 산업 클러스터를 활용한 식품 관련기술의 개발촉진

농업 생산기술·가공 기술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과 관련 사업자, 연구자와 기존에 전국에서 전개하고 있는 민간기업 등에 의한 공업 기술 관련의 연계 네트워크인 산업 클러스터에 참가하는 사업자와의 매칭을 촉진한다.

② 산업종합연구기구와 농업연구기구의 연계

연계 협정을 체결한 연구·협력을 통하여 연구 시설·설비 등 상호 이용 및 연구자의 연구 교류 등 연구 협력을 촉진한다.

68) 農商工連携研究会 “전계”, 42면

69) 農商工連携研究会 “전계”, 42면

70) 農商工連携研究会 “전계”, 42면

③ 지방자치단체 공설식, 농업 보급 지도센터 등 연계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공업기술센터에 농상공 연계 기술 어드바이저를 설치함과 더불어 공업기술센터, 농업·임업·수산시험장, 농업 보급 지도 센터 등의 연계에 의한 기술개발·기술 지도를 강화하는 등 임야, 수산 분야도 포함한 연구기관 등의 연계와 산·학·관 연계 추진을 통하여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의 충실을 도모한다.

2) 브랜드 조성기)

① 브랜드 확립 추진

지역에서의 브랜드 콘셉트의 설정이나 마케팅에 이르는 일관된 대응 및 해외에서의 브랜드 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

② 지리적 표시제도(Geographical Indications) 검토

WTO(세계무역기구)에 있어서의 논의의 진척 상황에 맞추어 결정된 산지에서 생산된 지정 품종, 생산 방법, 생산 기간 등이 적절히 관리된 농림수산물에 대해 지리적 표시를 부여 하는 제도(GI)의 정비에 대해서 국내 기업 등 기존 시책과의 조정을 도모하면서 검토한다.

③ 소비자가 느끼는 「맛」등에 대응한 팔리는 상품 만들기 지원 추진

상품개발과 판로 개척의 연동을 촉진하기 위해 「팔리는 상품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형태로의 만들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hands-on 지원을 검토한다.

또한 식료 관련 산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네트워크를 가지는 폭넓은 인재를 등록하는 코디네이터 뱅크의 활용을 통하여 상품개발의 전문가가 구매가치가 있는 상품 생산에 지원을 한다. 그리고 「맛」의 평가 지표를 활용한 농림수산물·식품의 브랜드 확립 등을 촉진하

71) 農商工連携研究会 “진계”, 43면

는 환경 조성에 대해 검토한다.

④ 식물공장 보급 및 촉진

식물공장의 보급·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및 판로확대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약형 에너지화와 자동화,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실수요자와의 연계강화에 의한 판로확대 시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시설설치지원을 추진하여 식물공장의 보급 및 확대를 촉진한다.

⑤ 품질관리

농림수산물·식품의 품질 관리 기술향상을 위하여 농상공 연계포럼 중에서 농업생산 공정관리(GAP), ISO 22000, HACCP 등 보급 촉진을 위한 세미나와 품질관리의 고도화를 위한 시설정비에 지원을 실시한다.

3) 농상공 연계 대응을 위한 경영 강화⁷²⁾

① 중소·소규모 기업의 인재대책사업(농상공 연계 실천형 연수) 활용

농상공 연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식습득을 촉진하는 인재육성사업을 실시한다.

② 농상공연계에 임하는 경영인재 육성

상공업과 농업 쌍방에 지견을 가지는 농상공 연계에 임하는 경영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대학교와 농업 대학교 등 농상공연계와 관련 있는 교육기관과의 연계와 식품 가공 등을 담당하는 지역 조직의 경영 강화를 추진한다.

③ 농림어업경영에의 IT활용 촉진

경제산업성에서 실시하는 IT경영 응원대사업을 활용하면서 농림수산성과 연계하여 IT활용에 관한 의견교환회의 개최와 연수·인재육성

72) 農商工連携研究会 “진계”, 44면 이하

을 추진하여 농림어업 경영에 IT활용을 촉진한다.

④ 경영지도 체제 충실화

신서비스 챌린지 플랜에 의한 상공업의 OB인재 활용, 식품기업의 OB 등도 포함한 코디네이터뱅크의 활용 등을 통하여 농림수산성과 경제산업성이 농상공 연계에 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영 지식·노하우의 향상을 위한 경영지도 체제를 구축한다.

4) 연계의 면적 확대추진을 통한 지역력 강화⁷³⁾

① 보급·계발 활동 추진

각 지역에서 농상공 연계 포럼, 신발전 투어, 캐리밴 등 보급·계발 활동을 계속적으로 실시한다. 관계 기관·단체가 연계하여 농림어업자의 적극적인 참가를 추진함과 동시에, 농림어업자가 농상공 연계를 통한 메리트를 적극적으로 소개한다.

농상공 연계에 임하는 사업자, 관계 기관·단체 등에 메일 매거진 등을 발행하여 각종 이벤트, 지원책, 선진적 사례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농상공 연계에 임하는 의욕이 있는 농림어업자, 상공업자의 정보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② 농상공연계에 임하는 클러스터 지원

지역 모두가 농상공 연계에 임하는 클러스터에의 지원을 충실 한다. 구체적으로는 가공 시설의 도입 지원 등을 통한 가공 산업 집적의 형성·고도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농상공 연계 코디네이터의 배치 등 활동 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식료 관련 산업으로 구성하는 클러스터에 대해서 관광업 등도 포함한 다른 업종과의 연계를 촉진하면서, 코디네이터뱅크의 활용

73) 農商工連携研究会 “전계”, 45면

등에 의해 사업자에게 보급·계발과 상담 업무, 기획에서 실행까지 견인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과 클러스터를 일체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한다.

③ 식품 관련 산업 유치, 기업에 의한 농업참가의 보급·주지활동 촉진

기업 입지 촉진법의 활용을 통한 식품 관련 산업의 유치를 촉진한다. 또한 농상공 연계의 유형인 기업 자금 제공과 종업원의 농업에의 참가에 대해서 보급·주지 활동을 추진한다.

제 4 장 우리나라의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강화 방안

농어업인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 그것도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양자 간의 연계촉진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다양하고 복잡한 법제도적 구성 체계, 즉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한계점을 적시하고 양자 간의 산업간 교류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촉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환언하면 양자 간의 연계·촉진을 위한 주요사항, 즉 입법형태, 사업 및 사업내용, 대상, 지원기준 등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또한 양자 간의 연계·촉진을 통한 농림수산업의 수익확대, 상품의 품질 향상, 차별화를 통한 상공업의 수익확대, 소비자에게 다양하고 고품질의 농림수산물·식품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식량자급력 향상 등과 연결된 법제도적 방안 강구가 요구된다.

1.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촉진 방안

우리의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 및 촉진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고, 그 구성 체계를 위한 사항을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서 양자 간의 연계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명확한 개념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 시대에 걸맞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농어업자, 중소기업자 및 유통업자, 판매자 등이 상호 연계된 거버넌스 하에서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기본방침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사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기존의 농어업과 중소기업 관련 사업 활동의 범주에서 벗어나, 탄력적으로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를 통한 생산·유통·판매하여 농림수산물의 공급·유통의 원활화, 수요 증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한다.

셋째,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즉 종래 농어업과 중소기업의 사업 관련된 업에 종사하는 자와 신규로 이에 참여하려는 자에 대한 요건을 정하여야 하며, 또한 연계를 통하여 판매하는 방법, 품질유지 및 이에 대한 검사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보고 및 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일련의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넷째,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촉진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의 원천으로써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또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률체계와의 연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농어업 관련 법령 또는 중소기업 관련 법령 시스템에 의해 구축되어 운용 중에 있는 지원조치를 활용 또는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이것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연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화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얻어진 정보를 구체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정보관리구축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다섯째,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유기적 관계형성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농림수산물 관련 생산자, 판매자 등이 자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즉 국가 또는 관련 행정기관이 일체가 되어 선진적인 연계·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 안(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 등을 통하여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촉진 입법체계

전술한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촉진 방안을 근거로 하여 그 주요 입법구성 체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촉진 주요 입법구성 안>

구 성	주요항목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에 관한 총칙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정의 · 기본방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촉진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과 중소기업의 연계사업계획의 수립 등 · 농어업과 중소기업의 연계사업 지역계획의 수립 등 · 농어업과 중소기업의 연계사업 촉진을 위한 생산기술 · 유통·판로개척 등 개발 · 농어업과 중소기업의 연계 전문 인력의 양성 · 농어업과 중소기업 연계 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농어업과 중소기업의 연계 사업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과 중소기업의 연계사업의 구분 및 종류 · 사업계획 인정, 절차 · 연계사업의 등록 · 사업계획 인정취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과 중소기업의 연계경영자 양성 및 활용 · 연계사업 시설 등에의 고용
농어업과 중소기업의 연계 촉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과 중소기업의 연계사업에 대한 재정보조 · 부담금 감면 · 일자리 창출 지원 · 각종 특례
그 밖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 등

3.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촉진 주요내용

(1)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촉진을 위한 총칙적 사항

총칙적 사항과 관련해서는 농어업과 중소기업의 연계의미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농어업 및 농어업 관련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에 관해서도 중소기업 관련 규정만을 법제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체계는 곧 그 대상을 다르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지원제도 등도 상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촉진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산업 간의 상호 유기적 관계, 즉 산업 간의 경계를 초월한 관계 구축을 의미한다. 따라서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에 대한 용어의 개념정립에 있어서는 종래 농어업 관련 법령상의 개념, 중소기업 관련 법령상의 개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에 대한 개념 정립과 관련해서는 대상의 범위선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농어업이라고 해서 농업과 어업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농림수산업이라 하여 그 대상을 광의로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아야 할 것인가도 더불어 고려하여야 한다.

(2)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촉진책에 관한 사항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인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새로운 사업 활동에 대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조치, 예를 들면 보조금, 저리융자, 신용보증 등을 지원하여 산업 간의 연계를 구축하고 촉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방향을 양자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계획의 방향성 제시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 참여하려는 자가 계획의 취지를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계획책임권자가 참여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정보체계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3)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정책에 의해 농림수산물 관련 산업의 설비투자 및 생산기술, 유통, 판로개척확대를 통하여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연계사업 시설의 확충과 관련하여 기존의 생산·공급시설 또는 유통·판매망과 연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지역의 새로운 관계망 확충과 관련하여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이러한 분야에 집중적인 추진을 위한 장기저리 융자지원과 보조 등을 통해 연계사업에의 투자와 창업이 활성화되고, 지역의 특성화를 살린 특화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고용효과가 증대되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4) 세제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설비의 설치, 판로개척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사업의 안정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공공부문의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경제위축으로 민간자본의 투자유치가 충분히 어려운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자본투자 및 운영비 분담방식에 의한 사업추진 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연계사업을 이용·활용하여 생산된 제품의 생산, 판매, 유통에 있어 부가가치세의 면제 및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도록 이에 대한 범위확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연계사업의 실적과 연동하여 우수연계경영의 지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 투자세액 공제율 확대

및 부담금 감면·면제제도의 도입도 연계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일 것이다.

4. 결 론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농어업과 중소기업에 관한 기존의 산업체계 특성을 넘어서서 이를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고 이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에 관해 규범적으로 설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양자 간의 상호 연계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와도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것에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촉진에 대한 새로운 방향 설정은 이러한 범주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가 산업 간의 벽을 넘어 안정적으로 상호 지원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정책과 지원이 없이는 그 성공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에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제가 우선 선결되어야 한다.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산업 간 연계구축은 적어도 우리의 산업체계에 있어서는 의미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그것도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경제위기에서 오는 우려에 적극적·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에 관한 법제의 구축 및 관련 입법과 제도를 준비하는 시도는 값진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김태완, “대외시장 개방과 농어촌지역 지원관련법률 비교분석”, 보건복지포럼, 2007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요”, 세라미스트제 11권 제2호, 2008

최환용,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동아시아 법제의 비교와 과제』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법제의 문제점과 과제”, 2008.

みずほリサーチ, “最近の中堅・中小企業動向について”, みずほリサーチ, 2008

成長力底上げ戦略構想チーム, “成長力底上げ戦略(基本構想)”, 2007

農商工連携研究会, “農商工連携研究会報告書”, 2009

經濟産業省・中小企業庁 経営支援部, “中小企業者と農林漁業者との連携による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法律案”, 2008

鈴木真理子, “農商工等連携関連2法案の制定について”, 農業信用保証保険, 2008

九州經濟産業局 産業部, “農商工連携の促進について”, 2009

中小企業庁, “農商工連携対策支援事業”, 2008

農林水産省・經濟産業省, “農商工連携施策利用ガイドブック”, 2009

<http://www.miaff.go.kr>

<http://www.smri.go.jp/noshoko/indx.html>

<http://www.pref.kochi.lg.jp/>

참 고 문 헌

<http://www.chugoku.meti.go.jp>

<http://www.maff.go.jp/j/press/soushoku/sanki/081225.html>

<http://j-net21.smrj.go.jp/expand/noshoko/law/index.html>

<http://www.smrj.go.jp/keiei/chikipg/037196.html>

<http://www.chusho.meti.go.jp/keiei/renkei/index.html>

http://www.maff.go.jp/j/soushoku/sanki/syokuhin_cluster/index.html

가

나

부 록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와의 연계에 의한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

2008년 5월 23일 법률 제38호

제 1 장 총칙(제1조~제3조)

제 2 장 농상공 등 연계사업의 촉진(제4조~제14조)

제 3 장 잡칙(제15조~제19조)

제 4 장 벌칙(제20조)

부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가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각각의 경영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여 행하는 사업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향상 및 농림어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①이 법률에 있어서 “중소기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본금 또는 출자의 총액이 3억 엔 이하의 회사,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300인 이하의 회사 및 개인으로서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그 밖의 업종(다음 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종 및 제5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에 속하는 사업을 주 사업으로 경영하는 자

2. 자본금 또는 출자의 총액이 1억 엔 이하의 회사,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00인 이하의 회사 및 개인으로서 도매업(제5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에 속하는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자
3. 자본금 또는 출자의 총액이 5000만 엔 이하의 회사,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00인 이하의 회사 및 개인으로서 서비스업(제5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에 속하는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자
4. 자본금 또는 출자의 총액이 5000만 엔 이하의 회사,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50인 이하의 회사 및 개인으로서 소매업에 속하는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자
5. 자본금 또는 출자의 총액이 그 업종마다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회사,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그 업종마다 정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회사 및 개인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자
6. 기업조합
7. 협업조합
8. 사업협동조합, 사업협동소(小)조합, 상공조합, 협동조합연합회 그 밖의 특별히 법률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그 연합회로서 정령으로 정한 자
 - ②이 법에 있어서 “농림어업자”라 함은 농업자, 임업자, 어업자 또는 이러한 자가 조직하는 단체를 말한다.
 - ③이 법에 있어서 “경영자원”이라 함은 설비, 기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 및 기는 그 밖의 사업 활동에 활용되는 자원을 말한다.
 - ④이법에 있어서 “농상공 등 연계사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경영향상 및 농림어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자(농

림어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 또는 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중소기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조, 제4조 및 제15조제1항에 있어서 같다)와 농림어업자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당해 중소기업자 및 당해 농림어업자 각각의 경영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여 신상품 개발, 생산 또는 수요개척 또는 신서비스 개발, 제공 또는 수요개척 하는 것을 말한다.

⑤이 법에 있어서 “농상공 등 연계지원 사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와의 교류기회 제공, 중소기업자 또는 농림어업자에 대한 농상공 등 연계사업에 관한 지도 또는 조언 그 밖의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 3 조(기본방침) ①주무대신은 농상공 등 연계사업의 촉진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정해야 한다.

②기본방침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농상공 등 연계사업의 촉진 의의 및 기본적인 방향에 관한 사항
2. 농상공 등 연계사업에 관한 다음 사항
 - 가. 농상공 등 연계사업의 내용에 관한 사항
 - 나. 농상공 등 연계사업의 실시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향상 및 농림어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 다. 농상공 등 연계사업의 촉진에 있어 배려하여야 할 사항
3. 농상공 등 연계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사항
 - 가. 농상공 등 연계 지원사업의 내용에 관한 사항
 - 나. 농상공 등 연계 지원사업의 촉진에 있어 배려하여야 할 사항

③주무대신은 기본방침을 정해 또는 이것을 변경하려 할 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식료·농업·농촌정책심의회, 임정(林政)심의회, 수산정책심의회 및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④주무대신은 기본방침을 정해 또는 이것을 변경한 때는 지체 없이 이것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2장 농상공 등 연계사업의 촉진

제4조(농상공 등 연계사업계획의 인정) ①농상공 등 연계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중소기업자 및 농림어업자는 공동으로 당해 농상공 등 연계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농상공 등 연계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것을 주무대신에 제출하여 그 농상공 등 연계사업계획이 적당하다는 취지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②농상공 등 연계사업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농상공 등 연계사업의 목표

2. 농상공 등 연계사업의 내용(당해 농상공 등 연계사업에 다음 조치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치의 내용을 포함한다) 및 실시기간

가. 중소기업자(농업개량자금조성법(1956년 법률 제102호)제3조제1항의 농업자 등(이하 “농업자 등”이라 한다)을 제외하고, 당해 중소기업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그 직접 또는 간접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가 행하는 농업자 등이 실시하는 동법 제2조의 농업개량조치(이하 “농업개량조치”라 한다)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농업경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그 밖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나. 중소기업자(임업·목재산업개량자금조성법(1976년 법률 제42호) 제3조제1항의 임업종사자 등(이하 “임업종사자 등”이라 한다)을 제외하고, 당해 중소기업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그 구성원을 포함한다)가 행하는 임업종사자 등이 실시하는 동법

제2조제1항의 임업·목재산업개발조치(임업경영 또는 목재산업 경영개선을 목적으로 새로운 임업부문 또는 목재산업부문의 경영을 개시 또는 임산물의 새로운 생산 또는 판매방식을 도입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임업·목재산업 개선조치”라 한다)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임업경영 또는 목재산업 경영에 필요한 설치 그 밖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다. 중소기업자(연안어업개선자금조성법(1979년 법률 제25호) 제3조제1항의 연안어업종사자 등(이하 “연안어업종사자 등”이라 한다)을 제외하고, 당해 중소기업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그 구성원을 포함한다)가 행하는 연안어업종사자 등이 실시하는 동법 제2조제2항의 연안어업의 경영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보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근대적인 어업기술 그 밖의 합리적인 어업생산방식의 도입(당해 어업기술 또는 당해 어업생산방식의 도입과 함께 수산물의 합리적 가공방식의 도입을 포함한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연안어업경영에 필요한 기기설치 그 밖에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3. 농상공 등 연계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 및 그 조달방법

③주무대신은 제1항의 인정신청이 있었던 경우에 있어 당해 신청과 관련하는 농상공 등 연계사업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는 그 인정을 하는 것으로 한다.

1. 전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항이 기본방침에 적절한 것
2. 당해 농상공 등 연계사업과 관련하는 신상품 개발, 생산 또는 수요 개척 또는 신서비스 개발, 제공 또는 수요 개척에 따라 당해 농상공 등 연계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영향상 및 농림어업자의 농림어업 경영개선이 행해지는 것

3. 전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항이 농상공 등 연계사업을 원활하고 확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것

제 5 조(농상공 등 연계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전조 제1항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인정 농상공 등 연계 사업자”라고 한다.)은 해당 인정과 관련되는 농상공 등 연계 사업 계획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주무 대신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다.

②인정 농상공 등 연계 사업자는 전항 다만 책의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을 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주무 대신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주무대신은 전조 제1항의 인정과 관련되는 농상공 등 연계 사업 계획(전 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의 인정이 있을 때는 그 변경된 것. 이하 「인정 농상공 등 연계 사업 계획」이라고 한다.)에 따라서 농상공 등 연계 사업이 실시되어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전조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인정에 대해 준용한다.

제 6 조(농상고 등 연계지원 사업계획의 인정) ①일반 사단법인 혹은 일반 재단법인(일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그 사원총회에 있어서는 의결권의 2분의 1이상을 중소기업자가 가지고 있는 것, 일반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설립에 임하여 거출된 재산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이 중소기업자에 의해 거출되고 있는 것에 한정한다.) 또는 특정 비영리활동 촉진법 (혜세이10년 법률 제7호) 제2조제2항에 규정하는 특정비영리 활동 법인(그 사원총회에 있어서는 표결권의 2분의 1이상을 중소기업자가 가지고 있는 것에 한정한다.)(은)는, 농상공 등 연계 지원 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농상공 등 연계

지원 사업 계획』이라고 한다.)을 작성해,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데 보다, 이것을 주무 대신에 제출하고, 그 농상공 등 연계 지원 사업 계획이 적당한 취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②농상공 등 연계 지원 사업 계획에는, 다음으로 내거는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농상공 등 연계 지원 사업의 목표
2. 농상공 등 연계 지원 사업의 내용 및 실시 기간
3. 농상공 등 연계 지원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의 액수 및 그 조달 방법

③주무대신은, 제1항의 인정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에 대하고, 해당 신청과 관련되는 농상공 등 연계 지원 사업 계획이 다음의 각호의 어느 것에도 적합한 것이라고 인정할 때는, 그 인정을 하는 것으로 한다.

1. 전항 제1호 및 제2호로 내거는 사항이 기본방침에 비추어 적절한 것.
2. 전항 제2호 및 제3호로 내거는 사항이 농상공 등 연계 지원 사업을 원활하고 확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적절한 것

제7조(농상공 등 연계지원 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전조제1항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인정 농상공 등 연계 지원 사업자」라고 한다.)은, 해당 인정과 관련되는 농상공 등 연계 지원 사업 계획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데 보다, 주무 대신의 인정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②주무 대신은, 전조제1항의 인정과 관련되는 농상공 등 연계 지원 사업 계획(전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의 인정이 있을 때는, 그 변경 뒤의 것. 이하 「인정 농상공 등 연계 지원 사업 계획」이라고 한다.)에 따라서 농상공 등 연계 지원 사업이 실시되어 있지 않다

고 인정할 때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전조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인정에 대해 준용한다.

제 8 조(중소기업신용보험법의 특례) ①중소기업 신용보험법(1950년 법률 제264호) 제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통보험(이하 「보통보험」이라고 한다.), 동법 제3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무담보 보험(이하 「무담보 보험」이라고 한다.), 동법 제3조의 3 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 소량 보험(이하 「특별 소량 보험」이라고 한다.) 또는 동법 제3조의 4 제1항에 규정하는 유동 자산 담보 보험(이하 「유동 자산 담보 보험」이라고 한다.)의 보험 관계이며, 농상공 등 연계 사업 관련 보증(동법 제3조제1항, 제3조의 2 제1항, 제3조의 3 제1항 또는 제3조의 4 제1항에 규정하는 채무의 보증이며, 인정 농상공 등 연계 사업 계획에 따라서 실시되는 농상공 등 연계 사업(이하 「인정 농상공 등 연계 사업」이라고 한다.)에 필요한 자금과 관련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중소기업자와 관련되는 것에 대한 다음의 곁(표)의 상란으로 내거는 동법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중 동표중란으로 내거는 자구는, 동표하란으로 내거는 자구로 한다.

제3조제1항	보험가격의 합계액이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와의 연계에 의한 사업 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규정하는 농상공 등 연계 사업 관련 보증(이하 「농상공 등 연계 사업 관련 보증」이라고 한다.)와)과 관련되는 보험 관계의 보험 평가액의 합계액과 그 외의 보험 관계의 보험 평가액의 합계액이 각각
제3조의2 제1항 제3조의3 제1항 제3조의4 제1항	보험가격의 합계액이	농상공 등 연계 사업 관련 보증과 관련되는 보험 관계의 보험 평가액의 합계액과 그 외의 보험 관계의 보험 평가액의 합계액이 각각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와의 연계에 의한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3항	당해 차입금 중	농상공 등 연계 사업 관련 보증 및 그 외의 보증 마다, 각각 해당 차입금의 액수 중
제3조의4 제2항	당해 채무자	농상공 등 연계 사업 관련 보증 및 그 외의 보증 마다, 해당 채무자
제3조의3 제2항	당해 보증을 한	농상공 등 연계 사업 관련 보증 및 그 외의 보증 마다, 각각 해당 보증을 했다
	당해 채무자	농상공 등 연계 사업 관련 보증 및 그 외의 보증 마다, 해당 채무자

②중소기업 신용보험법제3조의8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신사업 개척 보험의 보험 관계로서 농상공 등 연계사업 관련 보증을 받은 중소기업자와 관련되는 것에 대한 동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동조 제1항 중 “2억 엔”은 “4억 엔(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와의 연계에 의한 사업 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8 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인정 농상공 등 연계 사업에 필요한 자금 (이하 ”농상공 등 연계 사업자금“이라고 한다) 이외의 자금과 관련되는 채무의 보증과 관련되는 보험 관계에 대해서는 2억 엔)”과 “4억 엔”은 “6억 엔(농상공 등 연계 사업자금 이외의 자금과 관련되는 채무의 보증과 관련되는 보험 관계에 대해서는 4억 엔),과 동조 제2항 중 ”2억 엔“이라고 있는 것은 ”4억 엔(농상공 등 연계 사업자금 이외의 자금과 관련되는 채무의 보증과 관련되는 보험 관계에 대해서는 2억 엔)“이라 한다.

③보통보험의 보험 관계로서 농상공 등 연계 사업 관련 보증과 관련되는 것에 대한 중소기업 신용보험법제3조제2항 및 제5조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동법 제3조제2항 중 “백 분의 70” 및 동법 제5조 중 “백 분의 70(무담보 보험, 특별 소량 보험, 유동자산 담보보험, 공해방지보험, 에너지대책 보험, 해외투자 관계 보험, 신사업 개척보험, 사업재생 보험 및 특정 사채 보험은 백 분의

80)”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백 분의 80”으로 한다.

④보통보험, 무담보보험, 특별 소량보험 또는 유동자산담보보험의 보험 관계로서 농상공 등 연계 사업 관련 보증과 관련되는 것에 대한 보험료는 중소기업 신용보험법 제4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보험금액에 연 백분의2 이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해 얻은 액수로 한다.

⑤인정 농상공 등 연계 지원 사업자로서 해당 인정 농상공 등 연계 지원사업 계획에 근거하는 농상공 등 연계 지원사업(이하 “인정 농상공 등 연계 지원사업”이라고 한다)의 실시를 위한 자금과 관련되는 중소기업 신용보험법제3조제1항 또는 제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채무보증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인정 농상공 등 연계 지원 사업자를 동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자로 간주하고, 동법 제3조, 제3조의2 및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 동법 제3조제1항 및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 중 “차입”은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와의 연계에 의한 사업 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인정 농상공 등 연계 지원사업 계획에 근거하는 사업의 실시를 위한 자금의 차입”이라 한다.

제 9 조(소규모 기업자 등 설비도입자금조성법의 특례) 소규모 기업자 등 설비 도입 자금 조성법(1956년 법률 제115호)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규모 기업자 등 설비 도입 자금 대출 사업과 관련되는 대출금의 대부분을 받아 동법 제2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대여기관(이하 “대여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동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설비자금 대출사업(이하 “설비자금 대출사업”이라 한다)과 관련되는 대출금으로서 인정 농상공 등 연계 사업 계획에 따라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규모 기업자 등이 설치하는 설비 또는 취득하는 프로그램 사용권(동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프로그램

사용권을 말한다)과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1의 차주에 대해서 대출할 수 있는 설비자금 대출사업과 관련되는 대출금의 금액은 1의 설비 또는 1의 프로그램 사용권에 대해 대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금액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액수 이내의 액수로 한다.

제10조(식품유통 구조개선 촉진법의 특례) ①식품유통 구조개선 촉진법 (1991년 법률 제59호)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식품유통 구조개선 촉진 기구는 동법 제12조 각 호의 업무 외에 다음의 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식품유통 구조개선 촉진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식품을 말한다)의 생산, 제조, 가공 또는 판매 사업을 실시하는 자(이하 “식품 제조업자 등”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인정 농상공 등 연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
2. 식품 제조업자 등이 실시하는 인정 농상공 등 연계 사업에 대해서 그 실시를 필요로 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해당 인정 농상공 등 연계 사업에 참가하는 것
3. 인정 농상공 등 연계 사업을 실시하는 식품 제조업자 등의 위탁을 받고, 인정 농상공 등 연계 사업 계획에 따라서 시설의 정비를 실시하는 것
4. 인정 농상공 등 연계 사업을 실시하는 식품 제조업자 등에 대해서 필요한 자금의 알선을 실시하는 것
5. 전 각 호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를 실시하는 것

②전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유통 구조개선 촉진 기구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 상란의 식품유통 구조개선 촉진법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 중 동표 중란의 자구는 동표 하란의 자구로 한다.

부 록

제13조제1항	전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	전 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 및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와의 연계에 의한 사업 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
제14조제1항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 및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와의 연계에 의한 사업 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제18조제1호 제19조 제20조제1항제1호	제12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	제1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 또는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와의 연계에 의한 사업 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
제20조제1항제3호	이 장	이 장 또는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와의 연계에 의한 사업 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농업개량자금조성법의 특례) ①인정 농상공 등 연계 사업에 제4조제2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조치가 포함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인정 농상공 등 연계 사업을 실시하는 인정 중소기업자(동조 제1항의 인정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정 중소기업자가 단체인 경우에 있어서의 그 구성원이 해당 조치를 실시할 때는 해당 조치를 농업개량 조치로 간주하고, 농업개량자금 조성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동법 제3조제1항 중 “농업자 또는 그 조직단체(이하 “농업자등”이라 한다)”는 “농업자 또는 그 조직단체(이하 “농업자등”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농업개량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와의 연계에 의한 사업 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의 인정 중소기업자(이하 “인정 중소기업자”라고 한다) 또는 인정 중소기업자가 단체인 경우에 있어서의 그 직접 또는 간접의 구성

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이 동법 제4조제2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해당 인정 중소기업자와, 동조 제2항 중 “농업자등”은 “인정 중소기업자”로, 동법 제4조 중 “1 농업자등”은 “1 인정 중소기업자”로, 동법 제8조 중 “그 신청자(그 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단체를 구성하는 농업자)”는 “인정 중소기업자인 신청자(그 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단체 또는 그 구성원)”으로, “그 경영”은 “그 신청자와 공동으로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와의 연계에 의한 사업 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인정 농상공 등 연계 사업을 실시하는 농업자등(그 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단체를 구성하는 농업자)의 경영”으로, “동향”은 “전조 제1항”으로 한다.

②농업개량자금 조성법 제2조(전항의 규정에 의해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농업개량자금(동법 제5조제1항의 특정지역 자금을 제외한다)으로서 인정 농상공 등 연계 사업자가 인정 농상공 등 연계 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상환기간(거치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동향의 규정에 관계없이 12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전항에 규정하는 자금의 거치 기간은 농업개량자금 조성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업·목재산업 개선자금조성법의 특례) ①인정 농상공 등 연계 사업에 제4조 제2항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조치가 포함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인정 농상공 등 연계 사업을 실시하는 인정 중소기업자 또는 인정 중소기업자가 단체인 경우에 있어서의 그 구성원이 해당 조치를 실시할 때는 해당 조치를 임업·목재산업 개선 조치로 간주하고, 임업·목재산업 개선 자금 조성법의 규

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동법 제3조제1항 중 “임업 종사자, 목재산업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정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정한다) 또는 이러한 자가 조직 하는 단체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임업 종사자등”이라 한다)”는 “임업 종사자, 목재산업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정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정한다) 또는 이러한 자가 조직 하는 단체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임업 종사자등”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임업·목재산업 개선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와의 연계에 의한 사업 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의 인정 중소기업자(이하 “인정 중소기업자”라 한다) 또는 인정 중소기업자가 단체인 경우에 있어서의 그 직접 또는 간접의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이 동법 제4조제2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해당 인정 중소기업자”로, 동조 제2항 중 “임업 종사자등”은 “인정 중소기업자”로, 동법 제4조 중 “1 임업 종사자등”은 “1 인정 중소기업자”로, 동법 제8조 중 “그 신청자(그 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단체 또는 그 단체를 구성하는 자)”는 “인정 중소기업자인 신청자(그 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단체 또는 그 구성원)”로, “그 경영”은 “그 신청자와 공동으로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와의 연계에 의한 사업 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인정 농상공 등 연계 사업을 실시하는 임업 종사자등(그 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단체 또는 그 단체를 구성하는 자)의 경영”으로, “동향”은 “전조 제1항”으로 한다.

②임업·목재산업 개선 자금 조성법 제2조제1항(전항의 규정에 의해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임업·목재산업 개선 자금으로서 인정 농상공 등 연계 사업자가 인정 농상공 등 연계 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상환기간은 동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12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전항에 규정하는 자금의 거치기간은 임업·목재산업 개선 자금 조성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연안어업 개선자금조성법의 특례) ①인정 농상공 등 연계 사업에 제4조제2항제2호다목의 규정에 따른 조치가 포함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인정 농상공 등 연계 사업을 실시하는 인정 중소기업자 또는 인정 중소기업자가 단체인 경우에 있어서의 그 구성원이 해당 조치를 실시할 때는 해당 조치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각각 연안어업 개선 자금 조성법 제2조제2항의 경영 등 개선 자금 중 정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자금으로 간주하고, 동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동법 제3조제1항 중 “연안어업의 종사자, 그 조직단체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연안어업 종사자등“이라 한다)”는 “연안어업의 종사자, 그 조직단체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연안어업 종사자등“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연안어업의 경영개선을 촉진하기 위해서 보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근대적인 어업기술 그 밖의 합리적인 어업생산 방식의 도입(해당 어업기술 또는 해당 어업생산 방식의 도입과 더불어 실시하는 수산물의 합리적인 가공 방식의 도입을 포함한다)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와의 연계에 의한 사업 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의 인정 중소기업자(이하 “인정 중소기업자”라 한다) 또는 인정 중소기업자가 단체인 경우에 있어서의 그 직접 또는 간접의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이 동법 제4조제2항제2호다목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 인정 중소기업자”, “경영 등 개선 자금, 생활개선 자금 및 청년 어업자 등 양성 확보 자금”은 “경영 등 개선 자금”으로, 동법 제4조

중 “1 연안 어업 종사자등”은 “1 인정 중소기업자”로, “경영 등 개선 자금, 생활개선 자금 및 청년 어업자 등 양성 확보 자금의 각각”은 “경영 등 개선 자금”으로, 동법 제8조제1항 중 “그 신청자(그 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단체 또는 그 단체를 구성하는 자. 이하 같다)”는 “인정 중소기업자인 신청자(그 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단체 또는 그 구성원)”으로, “그 경영”은 “그 신청자와 공동으로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와의 연계에 의한 사업 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인정 농상공 등 연계 사업을 실시하는 연안어업 종사자등(그 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단체 또는 그 단체를 구성하는 자)의 경영”으로 한다.

②연안어업 개선 자금 조성법 제2조제2항(전항의 규정에 의해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영 등 개선 자금 중 정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자금으로서 인정 농상공 등 연계 사업자가 인정 농상공 등 연계 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상환기간은 동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종류마다 12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전항에 규정하는 자금의 거치기간은 연안어업 개선 자금 조성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종류 마다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과세특례) 인정 농상공 등 연계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해당 인정 농상공 등 연계 사업과 관련되는 신상품 또는 신서비스의 수요 개척의 정도가 경제산업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 하는 것에 대하여 경제산업대신의 확인을 받은 자가 해당 인정 농상공 등 연계 사업 계획에 따라서 취득 또는 제작한 기계 및 장치에 대해서는 조세특별조치법(1957년 법률 제26호)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의 적용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3장 잡 칙

제15조(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등의 책무) ①국가, 지방공공단체 및 독립 행정법인중 소기업 기반 정비 기구는 중소기업 또는 농림어업에 관한 단체와 연계하여 농상공 등 연계 사업의 촉진을 도모함과 더불어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와의 교류 또는 연계의 추진, 연수, 정보제공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②국가는 농상공 등 연계 사업의 촉진에 있어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배려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지도 및 조언) 국가는 인정 농상공 등 연계 사업자 또는 인정 농상공 등 연계 지원 사업자에 대해 해당 인정 농상공 등 연계 사업 또는 인정 농상공 등 연계 지원사업의 확실한 실시에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보고의 징수) ①주무대신은 인정 농상공 등 연계 사업자에 대해 해당 인정 농상공 등 연계 사업 계획의 실시 상황에 대해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주무대신은 인정 농상공 등 연계 지원 사업자에 대해 해당 인정 농상공 등 연계 지원사업 계획의 실시 상황에 대해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주무대신 등) ①제3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있어서의 주무대신은 기본방침 중 동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대신 및 경제산업대신으로, 동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대신, 경제산업대신, 총무대신, 재무대신, 후생노동대신 및 국토교통대신으로 한다.

②제4조제1항, 동조 제3항(제5조제4항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전조 제1항 및 다음 조에 있어서의 주무대신은 농림수산부 대신으로, 경제산업대신 및 인정 농상공 등 연계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을 소관 하는 대신으로 한다.

③제6조제1항, 동조 제3항(제7조제3항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및 전조 제2항에 있어서의 주무대신은 농림수산부대신 및 경제산업대신으로 한다.

④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있어서의 주무성령은 전 2항에서 규정하는 주무 대신의 공동으로 발하는 명령으로 한다.

⑤다음 조에 있어서의 주무 성령은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주무대신이 발하는 명령으로 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서 규정하는 주무대신의 권한은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지분부국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4 장 벌 칙

제20조(벌칙)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고, 또는 허위 보고를 한 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인(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규정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 있어 같다)의 대표자 또는 법인 혹은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에 관해 전항의 위반행위를 했을 때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해서도 동항의 형을 과한다.

③법인이 아닌 단체에 대해 전항의 규정의 적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그 소송 행위에 대해 법인이 아닌 단체를 대표하는 것 외에 법인을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는 경우의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기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기산해서 6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조정규정) 이 법의 시행일이 일반 사단법인 및 일반 재단법인에 관한 법률(2006년 법률 제48호)의 시행일 전인 경우에는 동 법의 시행일의 전날까지 제6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동항 중 “일반 사단법인 또는 일반 재단법인(일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그 사원총회에서 의결권의 2분의 1이상을 중소기업자가 가지고 있는 것, 일반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설립에 임하여 거출된 재산의 가액”은 “민법(1896년 법률 제89호)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법인(그 출자금액 또는 거출된 금액”과, “거출되고 있다”는 “출자 또는 거출되고 있다”로 한다.

제 3 조(검토)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5년을 경과했을 경우 이 법률의 시행의 상황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결과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와의 연계에 의한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년 7월 18일 정령 제234호

내각은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와의 연계에 의한 사업 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 (2008년 법률 제38호)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8호, 제8조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3조 및 동법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 정령을 제정한다.

제 1 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와의 연계에 의한 사업 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그 업종마다의 자본금 또는 출자의 총액 및 종업원의 수는 다음 표로 한다.

	업 종	자본금 또는 출자 총액	종업원 수
1	고무제품 제조업(자동차 또는 항공기용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및 공업용 벨트 제조업을 제외한다)	3억 엔	900인
2	소프트웨어업 또는 정보처리 서비스업	3억 엔	300인
3	여관업	5천만 엔	200인

②법제2조제1항제8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조합 및 연합회는 다음과 같다.

1. 사업협동조합 및 사업협동소조합, 협동조합연합회
2.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연합회 및 농사조합법인

3. 어업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연합회, 수산가공업협동조합 및 수산가공업협동조합 연합회
4. 삼림조합 및 삼림조합연합회
5. 상공조합 및 상공조합연합회
6. 상점가 진흥조합 및 상점가 진흥조합연합회
7. 소비생활협동조합 및 소비생활협동조합연합회
8. 생활위생 동업 조합, 생활위생 동업 소조합 및 생활위생 동업 조합 연합회로써 그 직접 또는 간접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5천만 엔(도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1억 엔) 이하의 금액을 그 자본금 또는 출자의 총액으로 하는 법인 또는 상시 50명(도매업 또는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100명) 이하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자인 것
9. 주조조합, 주조조합 연합회 및 주조조합 중앙회로써 그 직접 또는 간접의 구성원인 주류 제조업자의 3분의 2이상이 3억 엔 이하의 금액을 그 자본금 또는 출자의 총액으로 하는 법인 또는 상시 300명 이하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자인 것 및 주판(酒販)조합, 주판조합 연합회 및 주판조합 중앙회로써 그 직접 또는 간접의 구성원인 주류 판매업자의 3분의 2이상이 5천만 엔(주류 도매업자에 대해서는 1억 엔) 이하의 금액을 그 자본금 또는 출자의 총액으로 하는 법인 또는 상시 50명(주류 도매업자에 대해서는 100명) 이하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자인 것

제 2 조(농상공 등 연계사업관련보증과 관련한 보험료율) 법제8조제4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보증을 한 차입의 기간(중소기업신용보험법 시행령(1950년 정령 제350호) 제2조제1항에 규정하는 차입의 기간을 말한다) 일 년에 대해 중소기업 신용보험법(1950년 법률 제264호) 제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통보험에 있어서는 0.41 퍼센트(어음할인 특수 보증(동령 제2조제1항에 규정하는 어음할인

특수 보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당좌 대월 특수 보증(동령 제 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좌 대월 특수 보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는 0.35퍼센트), 동법 제3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무담보 보험에 있어서는 0.29퍼센트(어음할인 특수 보증 및 당좌 대월 특수 보증의 경우는 0.25퍼센트), 동법 제3조의3 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 소량 보험에 있어서는 0.19퍼센트(어음할인 특수 보증 및 당좌 대월 특수 보증의 경우는 0.15퍼센트), 동법 제3조의4 제1항에 규정하는 유동 자산 담보 보험에 있어서는 0.29퍼센트로 한다.

제 3 조(농업개량자금 특례의 상환기간 및 거치기간) ①법 제11조제2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12년 이내로 한다.

②법 제11조제3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 4 조(임업·목재개량자금 특례의 상환기간 및 거치기간) ①법제12조제2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12년 이내로 한다.

②법제12조제3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법 제12조제2항에 규정하는 자금과 관련되는 도도부현 대출금(임업·목재산업 개선 자금 조성법 시행령(1976년 정령 제131호)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도도부현 대출금을 말한.)에 대한 동령 제 7조제1항제1호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동호 중 “4년”은 “6년”으로 한다.

제 5 조(연안어업개선자금조성법의 특례) ①법 제13조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자금은 다음 표의 상란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하며, 동항의 연안어업 개선 자금 조성법(1979년 법률 제25호) 제2조제2항의 경영 등 개선 자금 중 정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자금은 동표의 상란의 규정에 따른 자금마다 각각 동표 하란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한다.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와의 연계에 의한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 금		경영 등 개선자금 종류
1	조선(操船)작업을 절력화하기 위한 기기의 설치 그 밖의 조선작업을 절력화 하기 위한 법 제4조제2항제2호 다목의 농림 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조치에 필요한 자금	연안어업 개선 자금 조성법 시행령(1979년 정령 제124호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표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금
2	어로작업을 절력화하기 위한 기기의 설치 그 밖의 어로작업을 절력화 하기 위한 법 제4조제2항제2호 다목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조치에 필요한 자금	영제2조의 표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금
3	전 2호에서 규정하는 기기를 구동 또는 작동시키기 위한 보기관인 기기의 설치 그 밖의 전 2호에 규정하는 조치와 함께 조선작업 또는 어로작업의 절력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 제4조제2항제2호 다목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조치에 필요한 자금	영제2조의 표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자금
4	어선에 설치되는 통상의 형식의 기기 또는 통상의 방식에 의한 기기와 비교해 어선에 있어서의 연료유의 소비가 절감 되는 기기의 설치 그 밖의 어선에 있어서의 연료유의 소비를 절감하기 위한 법 제4조제2항제2호 다목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조치에 필요한 자금	영제2조의 표 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금
5	연안어업 개선 자금 조성법 제3조제1항의 연안어업 종사자등 (이하 “연안어업 종사자등”이라 한다)이 농림수산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근거해 농림수산대신이 정하는 종류에 속하는 수산 동식물의 양식 기술(이하 “양식 기술”이라 한다) 또는 농림수산대신이 정하는 양식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	영제2조의 표 제5호에서 규정하는 자금

부 록

자 금		경영 등 개선자금 종류
	당 양식기술의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연안어업 경영에 필요한 기기의 설치 그 밖의 연안어업 경영에 필요한 법 제4조 제2항제2호 다목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조치에 필요한 자금	
6	연안어업 종사자들이 수산자원의 관리에 관한 상호결정을 체결하고 농림수산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근거해 수산자원을 합리적·종합적으로 이용하는 어업 생산 방식의 도입(해당 어업 생산 방식의 도입과 더불어 실시하는 수산물의 합리적인 가공 방식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 있어 같다)을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어업 생산 방식의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연안어업 경영에 필요한 기기의 설치 그 밖의 연안어업 경영에 필요한 법 제4조제2항제2호 다목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조치에 필요한 자금	영제2조의 표 제6호에서 규정하는 자금
7	연안어업 종사자들이 어장의 보전에 관한 상호결정을 체결하고 농림수산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근거해 양식업의 생산 행정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어업 생산 방식의 도입을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어업 생산 방식의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연안어업 경영에 필요한 기기의 설치 그 밖의 연안어업 경영에 필요한 법 제4조제2항제2호 다목의 농림 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조치에 필요한 자금	영제2조의 표 제7호에서 규정하는 자금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와의 연계에 의한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법 제13조제2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자금은 다음 표의 상란의 규정에 의하며, 해당 자금과 관련되는 동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 및 동조 제3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해당 자금의 종류에 따라 각각 동표 중란 및 하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자금의 종류		상환기간	거치기간
1	영제2조의 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하는 자금	9년 이내	3년 이내
2	영제2조의 표 제5호에서 규정하는 자금	5년 이내	3년 이내
3	영제2조의 표 제6호 및 제7호에서 규정하는 자금	12년 이내	5년 이내

부 칙

제 1 조(시행기일) 이 정령은 법의 시행일(2008년7월21일)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와의 연계에 의한 사업 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농업자 등이 실시하는
농업개량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 등을 정하는 성령**

2008년 7월 18일 농림수산성령 제48호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와의 연계에 의한 사업 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2008년 법률 제38호) 제4조제2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와의 연계에 의한 사업 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제2호 가목의 농업자 등이 실시하는 농업개량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 등을 정하는 성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 1 조(정의) 이 성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와의 연계에 의한 사업 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 2 조(농업개량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 법 제4조제2항 제2호 가목의 농업자 등이 실시하는 농업개량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경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2. 법 제4조제2항 제2호 가목의 중소기업자와 연계하여 인정 농상공 등 연계 사업을 실시하는 농업자 등(해당 농업자 등이 단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인 농업자 중 해당 인정 농상공 등 연계 사업을 실시하는 자를 포함한다. 다음 호에 있어서 “연계 농업자 등”이라 한다)이 생산하는 농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와의 연계에 의한 사업 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농업자 등이 실시하는 농업개량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 등을 정하는 성령

(다음 호에 있어서 “농축산물 등”이라 한다)을 원료 또는 재료로써 상당 정도 사용하는 것이 전망되는 가공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의 개량, 조성 또는 취득(이하 “개량 등”이라 한다)

3. 연계농업자등의 생산하는 농축산물 등을 상당 정도 판매하는 것이 전망되는 판매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의 개량 등

제 3 조(임업·목재산업 개선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 법 제4조제 2항 제2호 나목의 임업 종사자 등이 실시하는 임업·목재산업 개선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임업 경영 또는 목재산업 경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임목의 취득
2. 법 제4조제2항 제2호 나목의 중소기업자와 연계하여 인정 농상공 등 연계 사업을 실시하는 임업 종사자 등(해당 임업 종사자 등이 단체인 경우에는 그 구성원인 임업 종사자 등 중 해당 인정 농상공 등 연계 사업을 실시하는 자를 포함한다. 다음 호에 있어서 “연계 임업 종사자 등”이라 한다)이 생산하는 임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써 상당 정도 사용하는 것이 전망되는 가공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의 개량 등
3. 연계임업 종사자 등의 생산하는 임산물을 상당 정도 판매하는 것이 전망되는 판매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의 개량 등

제 4 조(근대적인 어업기술 그 밖의 합리적인 어업생산방식의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 법 제4조제2항 제2호 다목의 연안어업 종사자 등이 실시하는 근대적인 어업 기술 그 밖의 합리적인 어업 생산 방식의 도입(해당 어업기술 또는 해당 어업 생산 방식의 도입과 더불어 실시하는 수산물의 합리적인 가공 방식의 도입을 포함한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 조타장치 그 밖의 조선작업을 절력화 하기 위한 기기, 설비 또는 장치(이하 “기기 ”이라 한다)의 설치
2. 동력식 낚시기 그 밖의 어로 작업을 절력화 하기 위한 기기 등의 설치
3. 전 2호에 규정하는 기기 등을 구동 또는 작동시키기 위한 보기판 그 밖의 기기 등의 설치
4. 추진 기관 그 밖의 어선에 설치되는 기기 등으로써 통상의 형식의 것 또는 통상의 방식에 의하는 것과 비교하여 연료유의 소비가 절감 되는 것의 설치
5. 연안어업 종사자 등이 농림수산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근거해 농림수산대신이 정하는 종류에 속하는 수산 동식물의 양식기술(이하 “양식 기술”이라 한다) 또는 농림수산대신이 정하는 양식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양식기술의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연안어업 경영에 필요한 기기 등(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 또는 설치
6. 연안어업 종사자 등이 수산자원의 관리에 관한 상호결정을 체결하고 농림수산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근거하여 수산자원을 합리적·종합적으로 이용하는 어업 생산 방식의 도입(해당 어업 생산 방식의 도입과 더불어 실시하는 수산물의 합리적인 가공 방식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 있어 같다)을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어업 생산 방식의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연안어업 경영에 필요한 기기 등의 구입 또는 설치
7. 연안어업 종사자 등이 어장의 보전에 관한 상호결정을 체결하고 농림수산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근거하여 양식업의 생산 행정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어업 생산 방식의 도입을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어업 생산 방식의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행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와의 연계에 의한 사업 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농업자 등이 실시하는 농업개량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 등을 정하는 성령

해지는 연안어업 경영에 필요한 기기 등(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 또는 설치

부 칙

제 1 조(시행기일) 이 성령은 법의 시행일(2008년7월21일)부터 시행한다.